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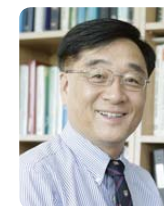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11



발 / 간 / 사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연구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학문간, 국가간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윤리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와 국가 사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외의 여러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윤리 의식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윤리의 확립은 연구자 개인의 의식 변화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연구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05년도 말에 겪었던 황우석 사태로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황우석 사태를 통해 연구윤리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사회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구 공동체에서는 데이터 조작,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자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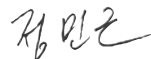


이는 아직도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연구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여 연구윤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는 부수적이거나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 하여금 진실되고 책임있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익한 GPS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연구를 남보다 앞서 실시 했다 해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처음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그동안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바람직한 연구 수행의 촉진제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을 개정하였으며, 후속조치로 한국연구재단은 지침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침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해설서가 우리나라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Contents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제 1 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1. 추진배경	2
	2. 외국의 현황	5
	3. 추진경과	12
	4. 지침 개정의 개요	16
제 2 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 (제1조)	22
	2. 적용 대상과 방법 (제2조, 제3조)	24
	3. 적용의 범위 (제4조)	31
제 3 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34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제7조)	36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제8조, 제9조)	39
	4.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41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42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44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55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83
제 5 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86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87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90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2
3. 검증원칙 (제17조)	94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96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97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104
2. 예비조사 (제19조)	106
3. 본조사 (제20조)	110
4. 판정 (제24조, 제25조)	112

제 8 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116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117
3.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120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123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125

참고문헌	128
------	-----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32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144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158



제1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 1. 추진배경 | 2
- 2. 외국의 현황 | 5
- 3. 추진경과 | 12
- 4. 지침 개정의 개요 | 16

제1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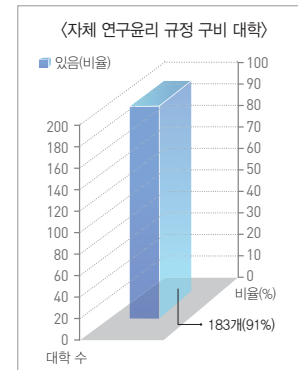


1. 추진배경

지침의 의미와 효과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지침은 2007년 2월에 제정된 이후, 몇 번의 부분 개정¹⁾을 거쳤으며, 현행 지침은 2015년 11월 3일에 개정된 교육부 훈령 제153호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논문 조작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관련 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2007년에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규정 마련의 토대가 됨으로써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기관의 경우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학 등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2014년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연구책임자, 김정희)의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201개 4년제 대학의 경우 91.0%에 해당하는 183개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처음 제정(2007. 2. 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된 이후, 제1차 개정(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2차 개정(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제3차 개정(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제4차 개정(2012. 8.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제5차 개정(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6차 개정(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을 거쳐 왔음.

대학이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 관련 규정 혹은 지침을 제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진 대학은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지침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 유용하고도 실질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첫째,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범위 등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기존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범위 속에 중복게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조항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할 때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각 학문 분야별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허용 가능한 중복게재인지 비난받을만한 중복게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
-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와 관련하여 기존 규정으로는 우리 연구공동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자의 학위논문의 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누가 제1저자가 되고 공동 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개념 정의와 함께 저자의 순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규정이 필요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둘째, 기존 연구윤리 지침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학위논문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논문에서의 표절, 정부 아닌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결과에서의 연구윤리 문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연구 활동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함

이처럼 연구 현장에서 기존 연구윤리 지침을 활용할 때 겪는 어려움이 많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 기존 연구윤리 지침을 활용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해 판단하고자 할 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지침이 갖는 모호성과 추상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으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동향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현황

1) 미국: 연방정부 연구진실성 사무국(ORI)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 “연구진실성 사무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이하 ‘ORI’로 표기함)”을 두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제보된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과 징계를 결정한다. 미국에서 연구진실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1년 당시 하원 과학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이던 앨 고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0년대 동안 국민보건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문제가 깊이 논의되었다. 1986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연구자금 지원과 계약에 관한 지침(NIH Guide for Grants and Contracts)”을 발표했고, 1989년에는 “과학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와 보고에 관한 신청 및 수혜 기관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Awardee and Applicant Institutions for Dealing with and Reporting Possible Misconduct in Science)”이 연방정부 규정으로 발표되었다(42 CFR Part 50, Subpart A).²⁾

1989년에는 국립보건원 산하에 “과학 진실성 사무국(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을,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과학 진실성 조사 사무국(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을 두었는데, 1992년 두 기관을 통합하여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지금과 같은 ORI를 설치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연구진실성 문제에 대한 초기 관심이 국민 보건 연구 분야에서 먼저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학연구 전체의 진실성 문제를 다루는 부서임에도, 현재까지도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부는 명칭과 조직 구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연구진실성 업무를 보건부 차관실 산하에 두는 것은 계속 유지되어 왔음

2) ORI Historical Background, <http://ori.hhs.gov/historical-background>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2) 영국: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UK Research Integrity Office, UKRIO)

영국에서 연구진실성에 관한 국가적 관심은 2006년 UKRIO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는 연구진실성을 모든 연구 분야에서 핵심 주제로 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UKRIO는 전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연구와 사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국을 대표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모든 연구자들과 기관들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UKRIO는 영국을 대표하는 연구진실성 기관이지만, 규제 또는 조사기능을 갖지 않으며 관리 및 조사 기능은 대학, 학회 등의 학술 단체의 관련 기관에서 담당한다. UKRIO는 국가·사회에서 연구진실성의 범주의 큰 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쟁점들에 대한 조언, 연구진실성 교육 촉진, 공통의 기준 개발, 사용자와 조사자에 대한 지원, 연구자 및 학술 편집자, 해외 연구진실성 기구와 업무 협조 등이 있다.³⁾

UKRIO는 “영국 보건부(UK Health Department)”, “연구 공동체(UK Research Community)”, “과학기술 위원회(th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과 협력하여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연구진실성을 증진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수행에 관한 규정(Code of Practice for Research: Promoting good practice and preventing misconduct)”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의 기본 구성은 “연구자들을 위한 자기 점검지(checklist)”, 1. 서론, 2. 원리, 3. 기관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UKRIO information, <http://www.ukrio.org/wp-content/uploads/UKRIO-leaflet-2013-web-version.pdf> (검색일: 2015년 2월 20일)

연구자들을 위한 자기 점검표: 이 규정집의 표지 내면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자기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기획 단계, 연구 수행 단계, 연구 종료 이후 단계마다 자신들에게 요청되는 연구진실성 유지 항목을 쉽고 간략하게 점검할 수 있다.

1장 서론: 서론에서는 이 규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진실성에 기초한 연구 수행과 연구부정행위 예방이 목적이라는 점(1.1)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연구의 관리와 연구 행위에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원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한다(1.2). 특히 위원회는 사회 전반에서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출판물 통해 널리 보급하고, 매년 연구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있다(1.12).

2장 원리: 이 규정의 원리가 탁월성(excellence), 정직(honesty), 진실성(integrity), 협력(co-operation), 책임(accountability), 훈련과 기능(training and skill), 안전(safety)의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장 기관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기준: 이 부분은 2장의 7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연구 기획부터 연구 종료 이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연구진실성의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좋은 연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3.1), 리더십과 관리(3.2), 훈련과 모니터링(3.3), 연구 설계(3.4), 협동 과제(3.5), 이해관계의 갈등(3.6), 인간 참여자들, 인간 재료 또는 개별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3.7), 동물과 관련된 연구(3.8), 건강과 안전(3.9), 지적 재산(3.10), 재정(3.11),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3.12), 재정 감시와 회계 감사(3.13), 동료의 평가(3.14), 출판과 저자(3.15), 연구부정행위(3.16).

이처럼 UKRIO의 규정은 연구진실성을 널리 보급하고, 사회 전반에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각 연구 단계가 각종 지침을 개발할 때 국가 수준의 기본틀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모든 연구자와 단체가 자발적으로 연구진실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체들에 대한 포괄적 조인과 기준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캐나다: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PRCR)

캐나다에서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매우 최근의 일이다. 캐나다는 학문 분야에 따라 “보건연구협회(CIHR)”,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평의회(NSERC)”,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평의회(SSHR)C” 등의 3대 학문연구 지원기관이 있는데, 2011년 이들 3대 연구지원 기관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진실성 사안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Panel on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약칭 PRCR)”를 창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대 연구지원 기관들과 PRCR은 2011년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3대 기관 프레임워크(Tri-Agency Framework: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를 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규제와 예방에 힘쓰기 시작했다.⁴⁾

PRCR의 창립과 운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다. 3대 연구지원 기관들은 PRCR 창립에 앞서서, 2001년에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회(Panel on Research Ethics, 약칭 PRE)”를 창립하고, “인간 관련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3대 기관 정책 성명(Tri-Council Policy Statement: Ethical Conduct for Research Involving Humans, 약칭 TCPS)”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2014년에 TCPS-2로 개정되었다.⁵⁾

3대 학문연구 지원 기관은 연구진실성 문제나 연구윤리 문제의 발생 시, 이를 각각 PRCR 또는 PRE에 의뢰하여 최종 판단을 구하며, PRCR을 구성하는 실제 전문가 인원은 5명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진실성 문제에 대한 직접 조사보다는 대학, 독립적인 연구기관, 3대 학문연구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제보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와 판단 업무만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파트너 기구인 PRE의 경우에도 캐나다 연방 전체에 걸쳐 선임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음

4) 캐나다 PRCR 소개, <http://www.rcr.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5) 캐나다 PRE 소개, <http://www.pre.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4) 호주: 연구진실성 위원회(ARIC)

호주는 연방정부 산하에 의료보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의학연구평의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약칭 NHMRC)”가 있고, 이를 제외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일반 학문분야의 모든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호주 연구평의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약칭 ARC)”가 있다. 인간 또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2007년에 NHMRC의 주도로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국가 성명(National Statement on Ethical Conduct in Human Research)”을 제정하였고, 연구진실성 고양에 대해서는 2007년에 NHMRC와 ARC의 협력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호주 규정(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제정하였다.⁶⁾

NHMRC와 ARC는 연구진실성 문제에 대한 자문과 연구부정행위 처리를 위해 2011년에 공동으로 “호주 연구진실성 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약칭 ARIC)”를 설치하였다. ARIC은 다시 NHMRC 산하에서 보건의학 연구분야에서의 연구진실성 문제를 담당하는 ARIC-NHMRC와 일반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진실성 문제를 담당하는 ARIC-ARC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ARIC-NHMRC와 ARIC-ARC의 구성원은 동일한 4명의 전문가들이다.⁷⁾

호주는 연구부정행위 사안을 개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계속되어 ARIC에까지 도달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11년 기구 설치 이후, 현재까지 5건의 사례만이 ARIC에서 처리되었다. 해당 연구자의 실명이나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 처리 등은 ARI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알려질 수 있음

6) 호주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및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들, <http://www.nhmrc.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0> (검색일: 2015년 2월 7일).

7) ARIC, <http://www.arc.gov.au/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aric> 및 <http://www.nhmrc.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5) 일본: 일본학술의회(SCJ)

일본은 연구부정행위를 공론화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연구진실성 강화가 범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서서히 연구진실성에 관련된 일본학술의회(SCJ)와 같은 학술연구기관 수준의 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과학자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이 드러났고, 2014년 만능 줄기세포 실험조작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8월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⁸⁾

연구진실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기구는 일본학술의회(SCJ)이다. 2003년 “과학 부정행위와 그 예방”을 발표한 것이 시초이며, 2006년 “과학자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사회에 진실을 알려야 할 과학자들의 책임이 부각되면서 2013년 “과학자 행동 수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 만능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학술의회는 11월 “과학의 건전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12월 “과학 연구진실성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잇달아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⁹⁾



8) 일본 SCJ의 연구진실성 진흥 노력, <http://www.scj.go.jp/en/report/code.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9) 일본 SCJ 발표 연구진실성 규정,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0-s3e-1.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6) 중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연구진실성위원회(ORI)는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 실행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로 2007년 3월 설립되었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ORI)는 1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실성 증진을 위한 MoST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사무국이고, “연구진실성 증진을 위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for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JCPR)”는 다음의 12개의 기관들과 학교들로 구성되었다.¹⁰⁾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The State Commission of Health and Family Planning
- 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TV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
The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 중국인민해방군총장비부(中国人民解放军总装备部)
General Armament Department of the Military (PLA)
- 중국과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중국사회과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중국공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The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 중국과학기술협회 The Chinese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10) Ping Sun, "China's Efforts for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AAAS Professional Ethics Report, Vol. XXIII, No. 4, Fall 2010.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3. 추진경과

문헌 검토

-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 연구 논문, 정책 보고서¹¹⁾, 규정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의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세계적인 학회나 출판사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확보하여 그 특성과 우리나라 연구윤리 지침 개정방향이나 내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현장 의견 수렴

-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현장의 요구 분석
 -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함
 - 악의적이고 행정 낭비적인 제보 방지를 위한 제보에 관한 내용 보완 필요
 - 대학과 학술지 발간 기관 간의 동일 사안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가 다를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대학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의 필요
 -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 사용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11)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2006, 연구책임자 조황희),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7, 연구책임자 이인재),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2008, 연구책임자, 이인재),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 연구(2010, 연구책임자, 이원용), 연구윤리활동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2012, 연구책임자, 이인재),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2013, 연구책임자, 이인재) 등

온라인 웹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 목적: 연구진이 마련한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대학 및 학술단체에서 연구윤리 관련 업무 책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 및 개정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찬성의 정도와 그 근거,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 일시: 2015년 2월 10일 ~ 3월 25일(약 45일)
- 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웹 설문 조사
- 설문 참여 대상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 및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회/연구소	
	4년제 대학	학회
표본 추출방법	1)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 책임 교수 1명 2) 연구진실성(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명 3) 연구윤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1) 학회장 1명 2) 편집위원장 1명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명 4) 편집위원 1명	
표본	전수 조사 대상자 총 3,259명 중 1,072명(32.9%) 응답	
추출방법	* 본 조사 전 대학 및 학회 연구윤리 관련 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정보 전달 협조 요청을 통해 전국 242개 대학 556명, 699개 학회/연구소 2,703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	

응답자 특성

전 체		사례수(명)	%
기관 유형	대학	338	31.5
	학회/연구소	734	68.5
응답자 직위	대학 연구윤리 책임자	103	9.6
	대학 연구진실성(연구윤리)위원장	32	3.0
	대학 연구윤리 담당직원	203	18.9
	학회 학회장	176	16.4
	학회 편집위원장	200	18.7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122	11.4
	학회 편집위원	236	22.0
연구 분야	인문학	343	32.0
	사회과학	312	29.1
	자연과학	78	7.3
	공학	121	11.3
	의약학	99	9.2
	농수해양학	23	2.1
	예술체육학	50	4.7
복합학	46	4.3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설문 내용

-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의 취지, 방향 및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의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
- 연구자, 대학,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의 적절성(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 게재의 개념이 명확한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적절한가?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것인가?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것인가? 등)
-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연구부정행위 접수, 처리,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등)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청의 조건, 순서, 처리 기한, 조사 결과의 제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
-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 대학, 연구기관 차원의 제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

공청회 실시

- 목적
 - 기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5. 6. 3(수) 15:00 ~ 18: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
- 주최 · 주관 : 교육부(주최), 한국연구재단(주관)
- 주제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 연구윤리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 목적

- 학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연구자 및 연구공동체의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분야별 연구윤리의 실천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연구 활동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5. 9. 17(목) 10:00 ~ 17:30
- 장소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대강당 1층
- 주최 · 주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주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주관)
- 대주제 : 연구윤리의 정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윤리의 실천 방안 I
(Research Ethics: Practical issues and policies)
- 세션 발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의 방향과 쟁점”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4. 지침 개정의 개요

총칙

개정 지침의 구성과 특징

- 총 제5장, 제33조, 부칙2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칙, 부칙
- 개정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항별 내용의 중복성 해소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윤리 지침 내용의 분리, 통합, 적합한 조항으로의 이동
- 국내 · 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설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연구윤리의 영역에 근거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명시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부당한 중복개재를 포함시키고, 특히,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던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개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개정의 목적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본 개정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하여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고자 함

적용 대상

-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의 연구 결과
 - 본 개정 지침의 제2, 3, 4, 5장을 적용한다.
- 대학등, 전문기관 자체의 연구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
 - 본 개정 지침의 제2, 3, 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이 없을 경우, 본 개정 지침의 제2, 3, 4장을 적용할 수 있다.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별 각각의 역할과 책임 명시

-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별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새롭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특히 연구자의 경우, 인간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연구진실성 확보,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비의 사용, 이익충돌에서의 책임 등 광의의 연구윤리의 세부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포함함

연구윤리 교육

- 대학등과 전문기관에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강조함. 특히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명시함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및 검증 체계 확립

-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본 개정 지침을 토대로 각각 실정에 따라 자체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바람직한 연구수행 활동을 확산하도록 규정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옹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부당한 중복게재의 추가)
-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및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표절〉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판단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가.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
- 나. 해당 행위 당시 연구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다.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연구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원칙과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가 50%이상으로 되도록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검증절차

-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이의신청 후 재조사 요청

- 재조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조사 요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강화함

후속조치

-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것에 대하여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개별 기관 내부의 공모나 묵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가 방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본 개정 지침의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 개정 지침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따르게 함으로써, 본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제2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 | 22

2. 적용 대상과 방법 | 24

3. 적용의 범위 | 31

제2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조(목적)는 「학술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연구윤리 지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포괄적인 학술 진흥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학술단체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면, 개정 지침은 이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모든 학술활동(학위논문 발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연구활동 등)에서의 연구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람직한 연구활동과 연구진실성의 확립은 모든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수행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의 적용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연구윤리의 확립과 적용은 연구자와 대학등의 구분이 없이,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술활동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본 개정 지침 제1조(목적)에 대한 대학 및 학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015년 2월)에 따르면, 대학 및 학술단체 모두가 본 개정 지침에서 제시한 목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적용 대상과 방법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본 개정 지침 제2조(정의)는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는 없는 신설 조항으로서, 개정 지침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연구자 개인, 연구수행 기관 성격에 따른 대학,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에 관한 정의는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대학등' 및 '전문기관'에 관한 정의 부분이다. 이 개정 지침에서는 대학, 국립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을 모두 포괄하여 '대학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연구수행 과정에 따라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 그리고 도출되는 결과와 그 형태에 따라 각각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본 지침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해나 혼동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위와 행위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자의 범위에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포함할 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 다.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있는 지의 문제이다. 제1호 연구자의 범위에는 통상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대한민국의학술원법 등의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의 종사자들로 규정된다. 그리고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 조항으로만 본다면, 대체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연구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연구현장을 보면,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대다수 대학원생들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2015년 대학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015년 2월)에 따르면, 84.3%가 연구자의 범위에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때,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도 연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연구윤리 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직접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 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본 개정 지침 제3조는 기존 지침 제2조(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방법의 서술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기존 지침의 적용 대상은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본 개정 지침은 ‘이 두 가지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 ‘대학등 및 전문기관 자체의 연구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유리 문제’에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따라 ‘적용한다’와 ‘준용할 수 있다’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 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첫째, 제1항은 본 개정 지침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학술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학술진흥사업과 각종 연구사업, 그리고 교육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대학등과 전문기관의 장은 이 개정 지침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유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본 개정 지침 제1항과 제2항은 대학등, 전문기관의 자체 연구 활동과 교육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의 연구유리 문제에 대해서는 본 개정 지침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유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자체적인 연구유리 지침이 없을 경우, 본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지침 제정과 시행은 특정 연구 활동이 본 개정 지침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체적인 지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학술 진흥과 바람직한 연구유리 문화의 확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학등과 전문기관이 자체적인 연구유리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개정 지침이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등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유리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굳이 의무적인 직접 적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개정 지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¹²⁾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http://www.law.go.kr/LSW/lsiInfoP.do?lsiSeq=137322#0000> (검색일 : 2015년 2월 7일)

이에 따라 본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대학등, 전문기관, 연구자가 학술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학술진흥사업과 각종 연구사업, 그리고 교육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본 개정 지침의 적용 범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술단체와 연구자의 논문의 성격에 따른 활용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 1) '가' 학회의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되는 경우
 - '가' 학회의 학술지의 발간 사업은 본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동시에 '가' 학회는 본 개정 지침을 근거로 하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 2) 연구자 '갑'의 연구 논문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가'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
 - '가' 학회 뿐만 아니라 '갑'의 논문은 본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갑'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학회는 '갑'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심사를 본 개정 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3) 연구자 '갑'의 연구 논문이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연구자 개인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로서 '가'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
 - '갑'의 논문은 본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약 '갑'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학회는 '갑'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가' 학회의 자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가' 학회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가' 학회는 본 개정 지침을 준용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적용의 범위 (제4조)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본 개정 지침은 바람직한 연구윤리 활동의 정착을 위해 학술 활동 전 범위에 걸쳐 연구윤리의 방향과 지침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과 자체 지침 마련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는 절차상의 구분에 불과하다. 연구윤리의 활동은 연구개발의 시작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연구윤리의 토대가 되는 학문후속세대들의 연구윤리의식 또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개정 지침의 적용 범위는 전 학문 활동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2015년 지침 개정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2015년 2월)에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본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에 대해 91.7%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특정 지원 여부를 떠나 모든 연구 활동에 본 개정 지침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34
-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 36
-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 39
- 4. 연구윤리위원회 | 41
-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 42

제3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 개정 지침 제2장(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신설된 규정이다. 이 개정 지침으로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와 자율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윤리 관련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은 모든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크게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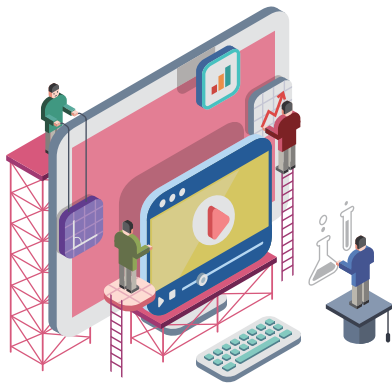
첫째, 인간 대상 피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활용하면 이는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에 속한다.

셋째, 연구자는 사회적 책임을 견지해야 하는데, 전문 지식을 쌓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고, 자신의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비의 수주, 연구 계약의 체결, 연구비 집행 등을 정직하게 이행해야 하고, 연구비 지원기관 및 연구 성과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를 통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시점의 연구윤리관련 정부와 소속 대학등의 연구윤리관련 규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제7조)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2장 제6조는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신설된 규정이다. '대학등'은 이 개정 지침 제2조(정의)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를 포함한다. 대다수 연구 사업 및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대학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등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연구윤리의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 개정 지침에서 대학등은 바람직한 연구윤리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대학등의 연구윤리 확립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첫째,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 항목은 기존 지침에는 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학계와 사회 일반에서 강조되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등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정 지침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등이 자체적인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 사업과 활동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등이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학등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올바른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중요한 점은 문제가 발생한 후 검증하고 처벌 또는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연구윤리 교육은 대다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르고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대학등은 자체 사정에 따라 연구 사업 및 연구 활동을 이끌기 위해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셋째, 대학등에서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대학등이 의심스러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거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넷째,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등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사 협조,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이다.

다섯째,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내용은 본 개정 지침에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이를테면,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정례적인 '국내 대학등의 연구활동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기관에서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을 의무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 수준의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의 수립과 지원 및 해외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비협조(자료 제공 거부, 불성실한 응답 등)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 지침 제7조는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신설된 조항이다. '전문기관'은 이 개정 지침 제2조(정의)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개정 지침은 사회 전반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전문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개정 지침 제2장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모든 연구자들은 자율적인 연구 활동 과정에서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대학등 및 전문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소속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체적인 연구윤리 규정과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은 모든 연구자,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연구의 진실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제8조, 제9조)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개정 지침 제8조는 ‘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에 관해 변경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기존 연구윤리 지침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 개정 지침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연구자,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내용으로 각각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개정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 지침 제8조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교육부가 마련하도록 하며, 적어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한 제도적 의무사항을 제시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본 개정 지침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는 기존 지침 제9조 제1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본 개정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가 신설됨에 따라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항목이 추가되었다. 기존 지침 제9조 제2항의 ‘자체 규정은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는데, 이는 본 개정 지침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에 적용 대상별 적용 방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 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본 개정 지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기존 지침 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지침의 제6조의 제5항의 표현을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는 기존 지침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침 제10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는 본 개정 지침 제28조(재조사)의 제2항 제1호와 제2호로 위치가 이동되었고,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기존 지침 제10조 제3항의 제3호와 제4호는 본 개정 지침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제1항으로 이동되었다. 이 내용은 기존 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제2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 이러한 중복을 피하고 가장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였다.

제28조(재조사)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 44
-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 55
-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83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미국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1999년 제정되고, 2000년 발표된 “연방 연구 부정행위 정책(Federal Research Misconduct Policy)”을 기준으로 하다가, 현재는 2005년부터 발효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중보건 정책(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42 CFR Part 93)”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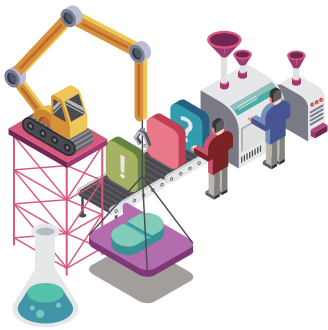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 현재 미국에서 연구부정행위는 2005년부터 발효된 연방정부 규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중보건 정책(42 CFR Part 93)”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연방정부 규정은 구체적으로 위조, 변조, 표절 등 3가지 유형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정직한 실수나 의견의 차이는 연구부정행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 위조, 변조, 표절의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 수준의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상세한 판단 기준을 규정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제보 시점으로부터 6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단, 6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을 재출판하거나 재사용했을 경우,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은 조사 대상이 된다.
-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연구부적절 행위들은 연방정부 규정 자체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이 부당한 저자표시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규정에는 빠져 있더라도, 대학 등 학계에서는 명예 실추로 비난의 대상은 된다.

13) 미국 ORI 관련 법령 규정 “42 CFR Part 50” 및 “42 CFR Part 93”의 원문.
https://ori.hhs.gov/sites/default/files/42_cfr_parts_50_and_93_2005.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ORI)와 결정권자(주로, 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ORI는 이들의 조사활동을 보고받고, 사후 감독한다.
- 예비조사 60일, 본조사 120일, 항소 후 재조사 120일 등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항소는 본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된다. 의혹이 해소되었을 경우, 예비조사로 종료된다. 각 단계의 조사보고서와 기간연장 요청은 ORI에 보고되어야 한다.
- (의무사항) 피고발자는 예비조사 단계, 본조사 단계, 본조사 종료 후 항소 단계 등에서 보고서 초안을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선택사항)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단계, 본조사 단계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제보자는 자신과 이익 갈등 관계에 있는 인사가 포함될 경우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인사가 조사위원회에 계속 있어야 할 경우, 제보자와의 이익 갈등 상황이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선택사항)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단계, 본조사 단계에서 보고서 초안을 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제보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영국

영국의 연구진실성위원회(UK Research Integrity Office, UKRIO)¹⁴⁾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소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개념

3.16.1. 기관등은 연구자들이 연구부정행위를 범하고 있고, 이것이 알려지게 될 때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한다. UKRIO는 연구부정행위를 적어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위조(Fabrication)
- 변조(Falsification)
- 데이터, 이해관계, 관여에 대한 오보(Misrepresentation of data and/or interests and/or involvement)
- 표절(Plagiarism)
-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책임수행에 있어 절차 미준수 또는 부주의
 - 인간(humans), 실험동물(animals), 환경(environments)에 대한 비합리적 위험 또는 위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
 - 연구기간 중 수집된 개인의 특급 또는 사적 정보의 적절한 취급



14) UKRIO 연구부정행위 규정 조항

<http://www.ukrio.org/publications/code-of-practice-for-research/3-0-standards-for-organisations-and-researchers/3-16-misconduct-in-research/> (검색일 : 2015년 2월 7일)

연구부정행위 조사원칙과 절차

3.16.2 기관들은 (3.1.4와 같이)연구부정행위에 관한 혐의들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출판해야 하며, 모든 혐의들이 적절한 시기에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본 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UKRIO Procedure for the Investigation of Misconduct in Research)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용되고, 모두 공정하게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조사받기 위한 하나의 기준 절차를 개발한 것이다.

3.16.3 조직은 직원 중 한 명 이상의 연구부정행위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연구자나 외부에서 연구 수행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그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그 직원이 그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훈련, 자원 및 기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3.16.4 기관들은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연구부정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연구자들은 징계 절차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연구자들이 관리부서의 소속이라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의 경우들은 자신들의 부서를 관리하는 기구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연구자들이 자신들 그리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16.5 기관들은 좋은 신념으로 연구 행위에 관한 우려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고,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우려 제기 또는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관한 기관의 정책에 일치해야 한다.

3.16.6 연구자들은 무엇이 연구부정행위를 구성하는지 알아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직의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좋은 연구수행이 연구수행과 관련한 우려 보고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좋은 신념을 갖고 연구수행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 사람이나, 연구부정행위 혐의로부터 벗어난 연구자들을 지지함에 있어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캐나다

연방 차원의 최상급 기관인 PRE와 PRCR은 기준 마련과 자문만을 제공할 뿐이며, 3대 학문연구 지원기관들은 소속된 하부 개별 연구기관들에 대해 연구자금 지원이나 연구 참여 자격만을 제한한다. 즉, 구체적인 연구윤리 또는 연구진실성 위반사실에 대한 판정과 징계 조치 여부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 등 개별 연구기관(Institution)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관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¹⁵⁾

연구부정행위 개념

- 캐나다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3대 기관 프레임워크”의 규정에 따라 위조, 변조, 표절, 중복 출판, 부적절한 저자 표시, 부적절한 고지(acknowledgement), 이익갈등 조정실패 등이다.
* 부적절한 고지: 타인의 연구성과나 업적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
- 위의 연구부정행위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 수준의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상세한 판단 기준을 규정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3대 학술기관에 제출하는 연구지원 신청서에 불확실, 부정확, 허위 정보가 포함되는 것,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연구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동 연구자나 공동 연구기관에 포함시키는 것, 연구기금이나 장학금의 운영상의 잘못, 각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이나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 연구에 필요한 승인, 허가, 인증 등을 사전에 받지 못하는 것 등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캐나다의 연구부정행위 범위가 미국보다 훨씬 넓은 것은, 캐나다의 연구부정행위 제재가 미국보다 미약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제재 정도가 강할수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정의가 명확한 것만을 대상으로 축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5) 캐나다 연구진실성 규정 “Tri-agency Framework”의 “3. Breaches of Agency Policies by Researchers” 및 “4.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참조, <http://www.rcr.ethics.gc.ca/eng/policy-politique/framework-cadr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연구부정행위 관련 업무 절차

- 부정행위 의심사례 발견 시
 - 연구기관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연구자와의 MOU에 따라 처리
 - 제보자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제보, *SRCR에도 제보
 - * PRE와 PRCR의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실 (Secretariat on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조사
 - 제보자의 제보를 접수한 해당 연구기관은 조사위원회를 구성
 - 예비조사(inquiry)와 본조사(Investigation) 모두 SRCR에 보고
- 조사 기간
 - 연구기관에 제보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예비조사는 2개월 이내, 본조사는 7개월 이내에 SRCR에 보고
 - SRCR의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매월 상급기관(3대 학문연구 지원기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항소
 - 조사 과정의 일부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피조사자는 항소가 가능함.



호주

호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¹⁶⁾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사례들

- 연구결과 조작(fabrication)
- 연구결과 변조(falsification) 또는 잘못된 발표(misrepresentation)
- 표절(plagiarism)
- 잘못된 저자 표시(misleading ascription of authorship)
- 이익갈등 조정 실패(failure to declare and manage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
- 연구기금 획득을 위한 변조 또는 잘못된 발표
- “인간 대상 연구윤리 규정(National Statement on Ethical Conduct in Research Involving Humans)”과 “과학적 목적을 위한 동물사용 실천규정(Australian Code of Practice for the Care and Use of Animals for Scientific Purposes)”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연구수행
- 인간 참여자의 안전, 또는 동물의 복지나 환경을 희생시키는 행위
- 심각하고 지속적인 무관심에 의한 이 규정의 위반 행위
- 다른 사람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또는 조장 행위

16)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의 “Part B, 10. Concepts and definitions” 및 “12. The framework for resolving allegations” 참조, https://www.nhmrc.gov.au/_files_nhmrc/publications/attachments/r39.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발견 시, 개별 연구기관의 담당자에게 제보할 수 있다.
- 개별 연구기관은 ARC 지원을 받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제보자의 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휴일 제외)에 ARC에 보고해야 한다.
- ARC는 해당 제보가 ARC 관할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한다.
 - 그렇다고 판단되면 해당 연구기관에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개요 문서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사안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연구기관의 자체 업무이다.)
 - ARC는 해당 제보가 ARC 관할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다른 가능한 대안을 권유한다.(예: NHMRC 및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 등)
- ARC는 제보 접수 30일 이내(휴일 제외)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ARIC은 연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 제보자는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연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자체 조사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제보자는 ARIC에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ARIC은 이를 해당 연구기관에 통지한다.
 - ARIC의 통지를 받고도 연구기관이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ARIC은 연구기관의 조사 지연이 합당한지 검토한다.
- 개인, 연구기관, 단체 등은 연구기관의 부정행위 조사에 불복할 경우, 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휴일 제외)에 ARIC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ARIC 사무국은 5일 이내(휴일 제외)에 재조사 신청자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ARIC 사무국은 재조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휴일 제외)에 신청자에게 진행상황 또는 기각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 ARIC 사무국의 재조사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휴일 제외)로 한다. 단, 추가 자료 수집 기간이나 연구기관, 재조사 신청자 등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일본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은 미약하여 2014년 8월 문부과학성이 연구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발표한 것이 거의 최초의 조치이다.¹⁷⁾ 연구진실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기구는 일본학술의회(SCJ)이다.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르면 "날조"(捏造), "개"(改ざん), "도용"(盗用) 등을 "특정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각 위조, 변조, 표절에 해당한다. "이중 투고"는 부적절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특정 부정행위는 문부과학성의 제재 대상이지만, 부적절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 특정 부정행위의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 수준의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독자적이거나 좀더 명확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 문부과학성 지침의 규정들은 의무사항이기보다는, 각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준으로 삼기 위한 예시 권장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인 개념 정의, 조사절차 규정, 각 조사단계의 기간 등은 각 연구기관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특정 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기존 연구자금 반환, 신규 연구자금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 특정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기간은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 문부과학성 지침은 각각 30일로 예시, 최종 결과까지의 기간은 150일로 예시
- 조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발자 또는 피고발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 조사 종료 후, 조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고발자와 피고발자에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피고발자는 불복할 경우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 ※ 문부과학성은 항소 기간을 30일, 재조사 기간을 50일로 예시하고 있음
- 조사 결과, 특정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은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사례들을 보고받아서 공시한다.
 - ※ 캐나다, 호주 등은 공표하지 않지만, 미국 ORI는 공표함

17) 일본 문부과학성(2014) 연구진실성 규정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8/1351568.htm, 영문판 <http://www.mext.go.jp/english/topics/1360017.htm>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중국

중국의 연구진실성의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법률을 토대로 주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중국의 법률**
 - 국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와 공공 이익을 침해하며, 인간의 건강을 해치며,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을 위반하는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 활동을 금한다.
 - 이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의 과학기술 성과를 복사하고 표절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활동 기간에 이를 도용하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들 또는 기관들의 상급 기관은 해당 연구자들을 교정해야 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국가 자연과학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the National Natural Science (2007)**
 - 이 규정은 신청 및 지원 단계에서 신청자, 연구책임자, 참여자, 그리고 지원 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명시한다.
 - 학위에 관한 중국의 규정 : Regulations of the PRC on Academic Degrees (1980)
 - 만약 부정, 기만 또는 이 규정들의 조항들에 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학위수여 기관은 해당 기관의 학위심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이미 부여된 학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 및 관련 업무

-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 감독위원회 사무소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조사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제재 결정을 위한 조사 결과를 제출함
- **과학기술부(MoST)**
 - 관련 프로그램들에 관한 전문 부서가 혐의 조사의 책임을 갖고 있고, 기획 관리 책임을 갖는 기관들에 대한 조사 업무를 신뢰
- **교육부(MOE)**
 -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규정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조사기관 설치 및 부정행위를 공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의심사례를 접수받고, 통상 이를 관련 대학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며, 만약 대학 총장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또한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 **대학의 대응 절차**
 - 조사기구 : 대학분과위원회 산하 학과위원회(the Academic Discipline Committee, ADC)
 - 의심사례 접수 및 사례 수집 : 2명의 ADC 위원들이 사례를 조사
 - 조사 : 조사팀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2인은 ADC의 연락 담당관들이어야 한다.
 - 판단 : 회의 패널은 3인의 ADC 회원들로 구성되고, 조사와 관련된 구성원들은 제외된다.
 - 조사 결론 : ADC 회의를 거쳐 아카데미 위원회(AC)의 부위원장의 서명에 의한다.
 -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 : 회의 패널은 3인의 아카데미 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조사와 판단 과정에 관련된 위원들은 제외된다. 그리고 재심 보고서는 AC의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이 개정 지침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서 제12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기존 연구윤리 지침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여러 유형들을 반영하고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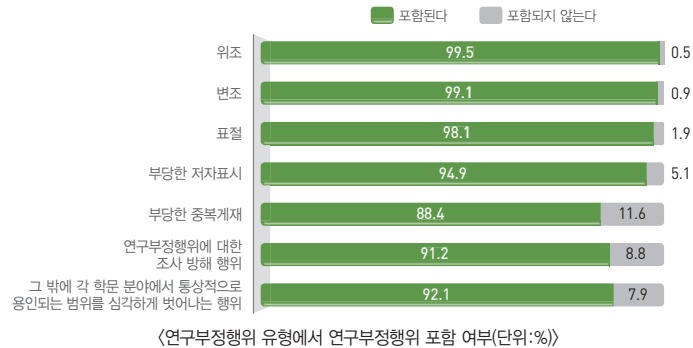
기존 연구윤리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으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지침에서는 이 6가지 이외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였다. 기존 지침은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을 통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할 때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개정 지침에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중복게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혼란이 있는 바, 국내 연구자들에게 중복게재가 연구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중복게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양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게재의 허용 범위나 판단 기준이 학문 분야나 연구의 특성에 따라 또는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출판사)의 출판 정책(publication policy)에 따라 매우 다르다. 외국에서도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구부적절행위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다. 최근에 국내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웹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2015년 2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순으로 90% 이상이 찬성을 하였고, 비록 88.4%의 찬성률이지만 부당한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개정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연구윤리 지침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례에 대해 기존 지침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개정 지침은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을 제거하고,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부정행위 일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위조, 변조, 표절에만 국한시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부정행위와도 연결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2015년 대학 및 학회 기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위조'가 포함된다는 의견은 99.5%, '변조'가 99.1%, '표절'이 98.1%로 높게 나타났고, '부당한 저자표시'가 94.9%,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91.2%, '부당한 중복게재'가 88.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련 전문가들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대학 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세부적인 수준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Bristol University)의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에 대한 규정¹⁸⁾을 참고할 수 있다.

18) 연구윤리정보센터-정책 및 규정
<http://www.bristol.ac.uk/secretary/studentrulesregs/researchmisc.html>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연구 행위에 대해 적절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연구 제안과 관련해서 기만하는 경우
- 연구 대상들과의 관계처럼, 연구 행위에서 비윤리적 행위
- 비밀유지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좋은 연구 수행으로부터 이탈. 이 결과로 인해 인간, 다른 동물 또는 환경에 대해 예기치 못한 위해의 위험이 발생
- 위조, 변조 또는 연구 데이터의 조작
- 예상된 결과들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의 삭제 또는 왜곡을 통해 연구 결과들을 왜곡하는 행위
- 결과들에 대해 부정직한 오역
- 거짓 또는 잘못된 것으로 알려진 또는 확인된 데이터의 출판
- 표절,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부정직한 사용
- 다른 저자들의 잘못 인용 또는 잘못 표기
- 부적절한 저자 표시
- 연구 기금 또는 연구 설비의 사기 또는 악용
- 연구부정행위를 시도, 계획 또는 공모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공모 또는 은폐

위조와 변조

이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위조를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변조를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간단히 말해, 위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각종 데이터(자료)를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고, 변조는 실제로 얻었거나 사용된 각종 데이터(자료)를 연구자가 연구 성과로 그럴듯하게 또는 보다 설득력있게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조와 변조의 차이(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사례로)¹⁹⁾

-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맞춤형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마치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논문을 작성한 것은 위조
- 배반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난자 273개를 185개로 축소한 것은 데이터 조작으로서 변조에 해당

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출판윤리와 부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학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우선 날조에 대한 규정과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²⁰⁾

19)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36쪽; http://web.dongseo.ac.kr/~sanhak/img/sub04_05.pdf (검색일 : 2015년 2월 7일)

20)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2013).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11쪽.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날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조'라는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조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로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1. 날조 : 과학적 연구 자료의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날조는 대단히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불법으로 판결된다.

날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과학분야에서 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가상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를 완성하는 것
- 2) 생명과학분야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과학실험의 연구 자료를 부정하게 생성
- 3) 과학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 자료에 추가적인 통계학적 유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것
- 4) 임상연구에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순응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기록에 임상정보를 삽입하는 것

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AMJE)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변조와 그 사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²¹⁾

2. 변조 :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또한 과학적 혹은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삭제/은폐하는 것도 변조에 포함된다.

변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경 수정
- 2) 연구기록의 일부(예: 날짜, 실험과정 등)를 부정하게 수정
- 3)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
- 4)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 등 실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
- 5) 논문의 연구대상, 대상자 수, 방법 등을 거짓되게 언급
- 6) 계속 연구과제 연구비 신청을 위하여 연구자료를 부정하게 수정
- 7) 논문발표를 위해 제출된 초록에서, 또는 전문적인 과학자 모임에서 구두 발표 시 연구범위를 그릇되게 언급하는 것

2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2013).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12쪽.

표절

이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양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저작물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²²⁾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중략)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인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라고 한다. 말바꿔쓰기를 하더라도 참고한 문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의 문장을 약간의 표면적 변화만을 주고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면 적절한 인용을 하여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중략)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이라고 한다. 요약도 말바꿔쓰기와 거의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어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표절은 타인의 개념, 결론, 설명, 가설 등을 인용이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윤리적이다. (중략)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인 경우에는 인용을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인지의 여부는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저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인용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표절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가 영어로 된 논문을 작성할 경우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논문에서 일부 내용을 차용하는 경우도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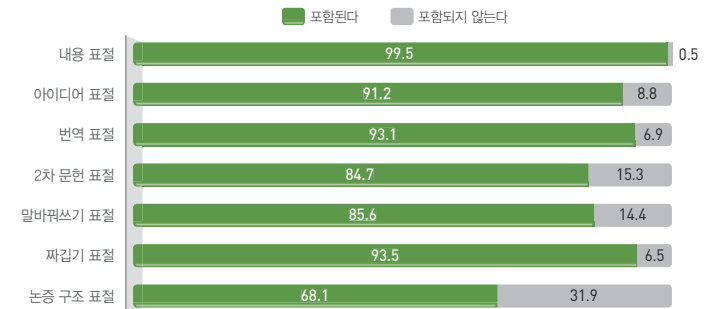
2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12쪽~14쪽.



이에 따라 본 개정 지침은 다음과 같이 총 7가지 표절 유형의 분류를 시도한 후 연구윤리 전문가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가.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나.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2차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마. 말바꿔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 바.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 사.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학 및 학회기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절에 포함되는 행위로는 90% 이상이 ‘내용 표절’, ‘짜깁기 표절’, ‘번역 표절’, ‘아이디어 표절’에 답하였고, 반면에 ‘논증 구조 표절’은 68.1%로 다른 유형보다 낮았다.



〈표절 유형 중 연구부정행위에의 포함 여부〉

특히 논문구조 표절 및 아이디어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표절 유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차 문헌 표절 및 자기 표절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또한 짜깁기 표절과 말바꿔쓰기 표절의 경우는 큰 범주에서 내용 표절에 속한다고 본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개정 지침에서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다음의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규정하였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이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The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제시하는 신진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²³⁾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기본 지침을 따르고 있다. 저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 연구의 이해와 설계, 또는 데이터의 획득, 또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경우
- 나. 원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이 초안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 다. 출판 버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

예

COPE는 위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되는 경우에 저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기금을 획득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연구 일반에 대해 감독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간략히 소개된 부당한 저자 표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보조원이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음
- 나. 연구 후원이 연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여론 주도자를 저자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음
- 다. A가 비평글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A의 상관이 저자로 표기되었음. A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비평글의 최종 원고가 제출되었음

23)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 예

또한 COPE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저자 표시와 저작권에서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 관련 사례, 그리고 올바른 대응 방법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대부분 학술지들은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 프로젝트의 기여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글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ICMJE 지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저자들이 아닌 모든 연구 기여자의 이름은 감사의 글에서 명기되어야 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이런 방식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명시된 점을 알아야 한다. (주로 미국에서) 일부 학술지들은 이들이 확인했는지에 관한 직접 서명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의제기/항소(Appeals):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이 저자에 표기되었다면, 당신은 해당 학술지 편집국에 당신의 이름을 논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편집자들은 저자 삭제의 문제에 관여되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술지들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지만, 해당 학술지가 혐의를 제기한 부정행위에 관한 사례들만을 다룬다. 이와 마찬가지로, COPE는 오직 학술지 편집자들이 제기한 사례들만을 청취하는 것이지, 저자에 대해 논쟁되는 사례들에 대한 항소 기구(appeal body)가 아니다.

기여자의 역할과 지위(contributorship): 현재 ICMJE 지침들은 다음과 같이 저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들의 기여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저자들은 각자가 무엇을 기여하였는지를 기술해야 하고, 편집자는 해당 정보를 출판해야 한다.' 일부 학술지들은 이런 정보를 출판하지만, 대다수 경우들에서 편집자들의 편의로 인해 이 기준이 이행되고 있다. (Instruction to Authors 참조).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s): 교신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증명 등을 받는 사람이고, 세부 연락처가 논문에 기재되어, 독자들이 재출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연구 팀과의 접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학술지 편집자들은 이를 순수하게 행정적 역할로서 간주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이를 연구 책임자(seniority)와 동일시 여긴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공동 저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누가 교신 저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당분간 세부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저자의 첫 번째 위치와 마지막 위치(First and last authors):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치가 가장 인기가 많다. 그래서 연구들을 언급할 때, 예를 들면, '스미스 외는 다음을 보여준다.'와 같이 첫 번째로 제시된 저자 이름을 사용하는 관행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순서로 이름이 표기된 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간주된다. 때로는 마지막 순서로 이름이 표기된 저자에게 중요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입장들은 서로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종종 저자들은 전문 지식과 지도에 기여했던 연구 팀의 상급자를 마지막 위치에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만약 해당 저자가 연구 설계, 데이터의 해석에 관여했고, 비판적으로 출판을 검토하였다면, ICMJE의 기준과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마지막 순서의 저자가 종종 손님(guest) 또는 명예 저자(honorary author)라는 점을 의심하기도 한다(저자의 순서 참조).

유령 저자(Ghost authors): 이 표현은 두 가지 방식에서 사용된다. 보통 역할이 인식되지 않은 (중중 상업적 후원자들이 제시하는) 전문 작가들과 관련된다. 이런 작가들이 연구들의 설계 또는 데이터의 수집 또는 해석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ICMJE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관여가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어는 또한 연구 프로젝트에 중요한 기여한 했던 사람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그리고 ICMJE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로서 목록에 열거되지는 않는다. ICMJE 지침은 이러한 관행을 분명하게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저자들로서 설계된 모든 사람들은 저자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목록에 표기되어야 한다.'

선물 저자(Gift authors): 저자들로서 목록에 표기되었지만 연구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들은 ICMJ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아첨을 위해 (또는 이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첨가되는 상급자(예를 들면, 부서의 장)일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다른 선물 저자의 유형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당신의 기여와 상관 없이, 단순히 당신의 출판 목록들을 부풀리기 위해, 당신을 위해 언젠가 같은 일을 해 줄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름이 추가된 동료이다.

집단 저자(Group authorship): 일부 학술지들은 집단 이름(예를 들면, XYZ 연구 집단)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많은 학술지들은 기여자들이 목록에 (주로 알파벳 순서로) 열거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글쓰기 집단 또한 이름이 명기되도록 요구한다. 집단 이름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이 이름이 종종 Medline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기여자들을 알파벳 순서로 열거할 때, 첫 번째 순서의 사람이 논문에서 의도하는 저자 지위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제 1 저자가 되기도 한다.

보증인(Guarantor): 우리는 통계 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해 방사선 기사 또는 X-ray를 해석하기 위한 통계학자를 기대해야 하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문적인 고려로 인해, 가장 최근의 ICMJE의 지침은 개인들에게 모든 연구의 양상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편집자들은 한 사람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그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자들로서 설계된 모든 사람들은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저자들이 목록에 표기되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해서 그 내용의 적절한 부분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저자들은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의 시작부터 논문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자를 위한 안내서(Instructions to authors): 학술지 편집자들 사이에는 저자 문제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지만, 저자의 목록에서 제시되는 방식들과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차이들도 있다. 당사는 목표로 하는 학술지의 저자를 위한 안내서(Instructions to Authors)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저자의 수(Number of authors):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도 없다. 과거 Medline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열거되는 저자들의 수를 제한했다. 이런 점은 저자들의 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고(대부분 집단들이 제한된 수의 범위에서 저자를 유지하고자 했다), 보다 큰 집단에서는 아마도 자리확보를 위해 다름이 증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저자들을 표기한다. 어떻게 많은 저자들이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누가 저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지를 동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래서 자격을 갖춘 모든 저자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자들이 함께 하게 되면 주로 논문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최종 마무리하기 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저자의 순서(Order of authors): ICMJE의 지침에 따르면, 저자의 순서는 '공동 저자들의 공동 결정(a joint decision of co-authors)'이어야 한다. 저자들은 목록에 열거된 저자들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자들이 오히려 목록에 열거된 저자들의 순서에 관해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자의 순서는, 어느 순서든지 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부 집단들은 저자들을 일파벳 순서로 표기하면서, 때로는 모든 저자들이 동등하게 해당 연구와 출판에 기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할 경우, 편집자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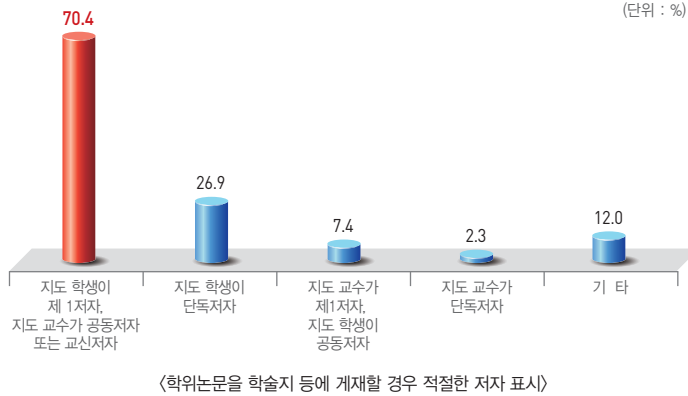
올바른 저자 표시에서 많은 논의가 따르는 유형이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거나 지도학생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이다.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지도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많은 부분들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경우, 지도교수가 단독 명의로 게재 또는 발표하거나, 지도학생을 배제한 채 다른 사람을 공동연구자로 해서 게재 또는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논문심사 교수가 논문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저자의 자격을 일정 정도 갖추었다면, 지도교수와 논문심사교수, 그리고 지도학생 등이 포함된 저자 자격 표시는 관련 학술지 및 학회기관의 규정에 따름으로써 올바른 연구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학문 분야별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지도교수의 저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지도교수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 지도교수에게 어떤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 학문분야에 따라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위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교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학위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을 쓸 때 최소한 지도교수가 공동저자의 자격을 갖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때, 적절한 저자 표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도 학생이 단독 저자'(26.9%), '지도 교수가 제1저자, 지도 학생이 공동저자'(7.4%), '지도 교수가 단독 저자'(2.3%) 순이었다.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학생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단독 저자로 그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학생과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에 대한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받아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 및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 범위에서 인정되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중복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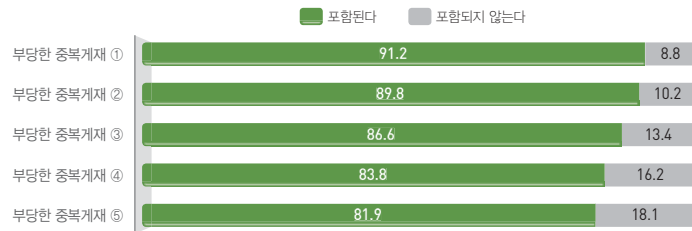
이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발표·게재된 주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심화 또는 확대된 후속 연구를 하게 되는 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것을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마치 처음 발표·게재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에서는 비록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정확한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만일 연구자가 이 개정 지침 제3조 제3항(학술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학술진흥사업과 각종 연구사업, 그리고 교육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에 해당되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 중에 이전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비 취득 및 연구 업적 인정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이 개정 지침을 위해 당초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중복게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유형 ①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유형 ②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유형 ③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인용된 양이나 길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 유형 ④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논문 쪼개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 유형 ⑤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한 대학, 학회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015년 2월)에 따르면, “유형 ①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91.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형 ⑤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81.9%)가 낮게 나타났다. 중복게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당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중복’의 범위에 관한 이해가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을 엿볼 수 있다.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 중 연구부정행위 포함 여부(단위:%)〉

학문 분야별 특성의 차이로 인한 중복게재 판단의 어려움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후속 연구가 나오는 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연구부정행위로서 중복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본 개정 지침 연구에서 가장 핵심 이슈였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연구 환경에 빈발하고 있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위에서 제시한 중복게재의 유형에 대한 웹 설문 조사의 결과와 공청회와 연구윤리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중복게재”는 다음의 각 목과 같이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게재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가.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중복게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후속 저작물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위의 ‘가’와 ‘나’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활용하면서 이를 연구비 수혜나 2중 3중으로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로 하여 가장 최소한도로 부당한 중복게재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역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중복게재를 했음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허용되는 중복게재인가 아닌가? 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생길 수 있다.

허용여부	용어	출처표시	부당이익(double count 등)
허용	이차출판	○	×
금지	중복게재	○	○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	○

본 개정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로서 중복게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의 표에서 부당한 중복게재 영역이다. 즉,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고, 부당 이익을 본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상에 부당한 중복게재만을 명시했다고 해서 ①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당이익을 본 경우, ②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고 부당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보지만,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우인지를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활용한 것’이 모두 규정상 부정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특정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에도 매번 모든 내용에 대해 인용표시를 해야하고, 특정 개념이나 설명에 대해 서술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통 사용하는 표현 등이 유사하게 써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해야 된다. 인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행위이지만, 그것까지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연구부정행위로서 중복게재를 자신의 연구 결과에 출처 표시를 않고, 이를 연구 업적/연구비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부당한 이익만 없으면, 출처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이익을 얻지 않고 출처표기만 하지 않을 경우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출처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면서도 만일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처벌 내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심하다는 불만을 없애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개정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중복게재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는 만큼 본 개정 지침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명시하고, 다른 중복게재에 대한 부분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항목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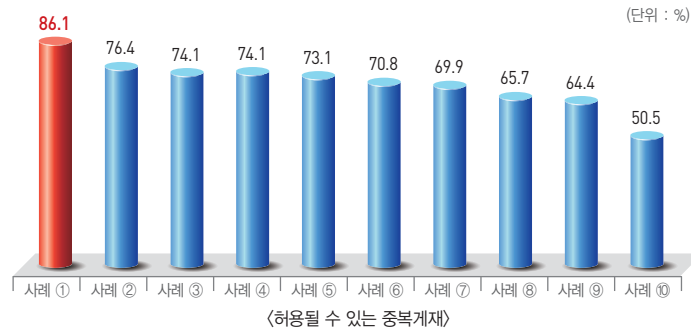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후속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마치 새로운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하며, 점차 이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차후의 지침에는 중복게재의 명시적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개정 지침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경우들은 학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중복게재의 사례들이다.

- 사례 ①**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밝힌 경우
- 사례 ②**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술지 또는 저서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 사례 ③** 기존에 연구·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인용·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 사례 ④** 이전 게재·출판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판하는 경우
- 사례 ⑤** 자신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출판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 사례 ⑥**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논문 등을 취합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서 등으로 출판하는 경우
- 사례 ⑦**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실을 재게재한 논문이나 저서에 명확히 밝힌 경우
- 사례 ⑧** 학술지에 짧은 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여 게재·출판한 경우
- 사례 ⑨** 이미 게재·출판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집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출처를 표시한 후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 사례 ⑩**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논문을 학교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재게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경우, 단, 교내학술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위에서 제시한 허용될 수 있는 중복게재의 사례들에 대해 얼마나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밝힌 경우'가 8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술지 또는 저서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76.4%), '기존에 연구·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인용·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74.1%), '이전 게재·출판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판하는 경우'(74.1%)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와 '허용될 수 있는 중복게재'의 구분이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에서 부당한 행위는 무엇보다 이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대상이 ① 이전의 연구결과와 저작물들을 활용할 때 아무런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 ② 이런 행위를 통해 연구비 수령 및 연구업적 인정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부당한 중복게재의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부당한 중복게재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허용될 수 없는 중복게재의 행위가 학계 일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연구비 수령 및 연구업적 인정과 같은 부당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가장 큰 경계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허용될 수 있는 중복게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밝히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대체로 학계 일반에서 다루는 '중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권장하는 의학술지 원고 작성의 '통일양식'에서 규정하는 중복출간(overlapping publication)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²⁴⁾

3.D. 중복게재(Overlapping Publication)

3.D.1. 중복투고(Duplicate Submission)

모든 생의학학술지는 투고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되어 출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1) 둘 또는 그 이상 학술지가 동시에 한 논문을 출판할 권리를 주장하여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 2) 여러 학술지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심사, 편집,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술지의 편집인이 공중보건의 중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러 학술지가 동시에 또는 공동으로 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D.2.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란 이미 인쇄 또는 전자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substantially) 중첩(重疊, overlap)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그 논문을 다시 출판한 것이라는 기록이 없는 한, 주요 정기간행물(primary source periodicals)을 구독하는 독자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모두 처음으로 출판되는 원저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 저작권법(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적 진실성(ethical conduct), 정보 자원의 효율성(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에 입각한 것이다. 원저 논문의 중복출판이 특히 문제가 큰데, 그 이유는 하나의 연구업적이 부당하게 중복 인정되거나 결과의 중요성이 부적절하게 부각되는 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 대부분이 이미 출판된 논문에 나와 있거나, 다른 학술지 (책 형태이건 전자 출판이건)에 투고 또는 게재예정인 원고에 포함된 연구 내용을 다시 출판해주려는 학술지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거부한 논문이나, 전문 학술대회에서 초록 또는 포스터 발표 등으로 예비 보고한 결과를 완성시켜 보고하는 논문까지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출판하지 않은 논문,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연구발표회 회보 등에 게재된 내용도 고려대상에 제외하라는 뜻도 아니다. 예정이 잡힌 학술대회 이전에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경우도 보통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씩 학회 초록집이나 기자회견 등에는 중요한 상세 자료(additional data), 도표, 표, 사진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24)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부록 1)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할 원고의 쓰기와 편집번역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교수 홍성태, 69쪽~70쪽.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저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이중게재 또는 중복출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논문을 출판한 일이 있거나 투고하는 원고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이미 투고한 경우 이 사실을 편집인에게 반드시 그리고 빠짐없이 진술해야 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에 포함된 주제를 취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경우 새 원고에는 이미 출판된 관련 논문을 언급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출판된 논문의 별쇄본을 원고와 편집인에게 함께 보내 비교 검토하기 쉽게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중게재 또는 중복출판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미 이중게재 또는 중복출판된 경우, 편집인이 틀림없이 해당 저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최소한 투고된 원고는 즉시 거부된다. 이 중복된 사실을 모르고 원고가 이미 출판되었다면 편집인은 저자 해명이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논문이 중복 또는 이중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것이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의 정보를 미리 발표하는 것, 특히 대중 언론매체에 발표하는 것을 학술계 대부분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자료의 사전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그 경우에도 편집인과 조정한 다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중보건상 위급한 상황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내 의학논문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⁵⁾

- 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최초 출판 후 1년~2년 사이에 발생
- 나. 동일한 논문의 중복투고 및 이중게재: 논문의 제목과 저자 위치가 변경하면서 2차 투고
- 다. 국내학술지에 분할 출간(논문뜨개기) 및 덧붙이기 출간: 논문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학술지에 2차 투고(논문뜨개기) / 새로운 기술, 기자재, 약품 도입 등으로 같은 내용의 논문을 다시 쓰는 덧붙이기 출간

본 개정 지침에서는 이와 같은 학계 일반의 '중복'의 기준을 존중하면서, 이를 벗어난 개정 지침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사업 및 연구 활동의 결과가 부당한 이득을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2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32쪽~33쪽.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구분

이 개정 지침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등에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로 유형을 각각 나누어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²⁶⁾ 제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는 경우, 설문조사 시 조사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실험 또는 설문 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등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2.19.]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계획,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2.19.]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19.]
 - 가.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공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나.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 다.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 라.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마.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
 - 사.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아.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 자. 기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6) 연구윤리정보센터-정책및규정 <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no=1384633> (검색일 : 2015년 2월 7일)

하지만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규정들도 있다.

예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일: 2007.01.02., 개정일: 2012.02.28.)²⁷⁾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 사용,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지침에서 정한다.'라고 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와 달리, 연구부정행위의 유형들을 연구부적절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예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제정일: 2007.09.01.)²⁸⁾은 연구부정행위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표절 행위에 대해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로 세분화시켜 정의하였고, 중복게재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2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27) 연구윤리정보센터-정책및규정
<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type=board&search=subject&keyword=%EC%97%B0%EC%84%B8%EB%8C%80&no=1383958> (검색일 : 2015년 2월 7일)

28)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 http://eng.korea.ac.kr/download/pdf/rules/03_3/3-3-16c.pdf (검색일 : 2015년 2월 7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와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려대학교 규정 교원연구윤리 지침 [3-3-16c]5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0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2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3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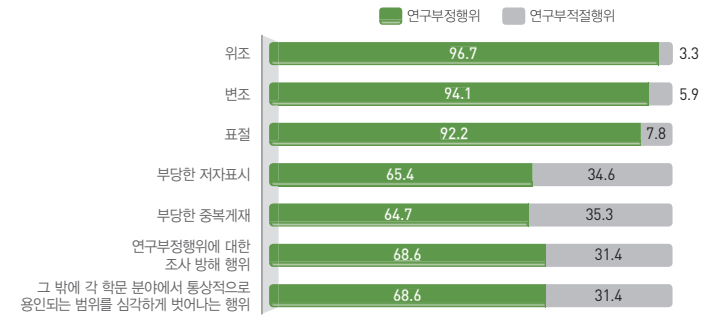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제34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유일한 발명가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계획이 해당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7.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8. 인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9. 연구비 유용행위
10.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 지침 진행 중에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이 속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연구부적절행위’에는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속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VS 연구부적절행위(단위: %)〉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60%이상이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 지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검증을 통해 명백하게 결정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처벌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연구문화와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도 결코 연구실제에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제13조)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는 기존 지침 제14조 제4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대학등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때, 해당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비난을 받을만한지, 해당 행위 당시 연구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연구부정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지,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높아진 연구윤리 지침으로 과거의 사안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본 개정 지침이 시행될 경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과거 학계에서 통용되었던 연구 관행들이 이 개정 지침의 시행에 따라 분명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본 개정 지침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 판단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물론



연구부정행위 판단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인 관행과 특수성, 그리고 보편적 기준 및 기타 관련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려는 오히려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개정 지침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부정행위 판단의 최소 기준으로서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해당 행위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에서 명백하게 금지되는 행위인지, 해당 학회에서 부정한 행위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간 기존 지침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의 예가 무엇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대학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을 판단하고자 할 때 모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 86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87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 개정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의 7개 항은 기존 지침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의 7개 항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1항에서 제보자를 “제보자”로 표기하여 제보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을 순서를 바꿔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제7항의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에서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과 같이 ‘불구하고’를 삭제하였다.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는 기존 지침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제1항의 피조사자를 “피조사자”로 표기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 1. 검증주체 | 90
- 2. 검증 시 적용지침 | 92
- 3. 검증원칙 | 94
- 4. 검증기간 | 96
- 5. 검증기구 | 97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연구기관 자체 검증의 원칙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기관 자체 검증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 과제가 수행될 당시에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관리·감독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다. 만약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외부기관이 대신할 경우,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자체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학계의 연구부정행위 자정 기능은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부정행위에 책임있게 대응할 때 실현된다. 이 내용은 "6-5 검증기구"(제21조 조사위원회 구성)에 연결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검증원칙의 예외

연구기관이 자체 검증을 할 수 없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연구수행 및 연구원 보유가 소규모여서 자체 조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연구기관의 경우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외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연구기관 자체의 인력 구조상,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관련된 연구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6-5 검증기구”(제22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연결된다.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산학협력 등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연구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 검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본 개정 지침에서는 시행일과 소급 적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지침의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그 이후의 연구부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지침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 학계의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연구는 이전 지침의 규정과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었던 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연구수행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었던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여 제재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므로 소급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연구부정행위 적용 기준일의 경우, 특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신/구 지침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학문 연구의 특성상 연구부정행위가 정확하게 언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고, 주로 월 단위의 개략적인 기간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를 지침 적용의 기준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한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침 적용의 기준일이 된다. 만일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 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적용 기준일이 된다.

▶ 사례 1

이 지침의 발령일이 2015년 11월 3일이므로,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실제 발생일자에 관계없이, 논문 발표일이 2015년 11월 3일 이전이면 이전 지침을, 2015년 11월 3일 이후이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사례 2

논문 발표일이 2015년 11월 3일 이전이면 이전 지침을 적용하되, 이 논문에 포함된 연구부정행위를 재인용한 연구결과물이 2015년 11월 3일 이후에 발표된 것이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3. 검증원칙 (제17조)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의 소재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후속 조치의 권한을 가진 연구기관 산하의 조사위원회에 두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서도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심으로부터 결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로 전환된다.



예 민사소송법에서 입증책임 전환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의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0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의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므로 상대방에 비해 증거능력의 우위를 상실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증거우위의 원칙).

※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원칙²⁹⁾

상이한 증거들이 있을 경우, 더 신빙성있는 증거가 우위에 있다는 원칙. 이를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적용하면, 제보자가 제출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더 신빙성있는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면서, 관련 자료의 파기, 훼손, 은폐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보자의 제보를 방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보자의 제보가 증거능력에서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피조사자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고서는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고의적 훼손과 정직한 실수로 인한 소실의 구분은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연구 기록 및 결과물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정황 파악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9) 한국연구재단(2014),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p.37.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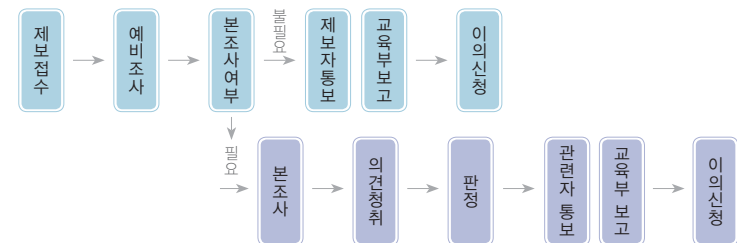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개시	종료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전체 기간 제24조	제24조,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			
예비조사 제19조	제19조,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착수	제19조, 종료 후 10일 이내 제보자에게 통보 제29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 제보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본조사 제20조	예비조사 종료 후, 즉시 착수	제24조, 판정 종료 후 즉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 통보 제29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재조사 제28조	제28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청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전체 검증기간은 예비조사 개시 후 최대 6개월이며, 연구기관은 이 기간 안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제19조), 예비조사로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24조).



※ 예비조사 후 “본조사 불필요” 판정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예비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하며, 본조사 판정 후 “결과 통보”에 대해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한다.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연구기관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연구분야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본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최소 1인은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로 선정되어야 한다.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 인원	5	7	9	11	13	15
전문가 인원	3	4	5	6	7	8
외부인 인원	2	3	3	4	4	5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조사위원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사제 관계인 경우,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조사위원이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사제 관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던 관계 등)로 특정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조사위원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피조사자와 협력 또는 경쟁 관계 양자를 모두 포함)에 학자적 양심에 따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본 개정 지침에 나타나 있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과정에서 면담 및 질의 등을 위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 조사 관련자에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관련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출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 자료 제출 불응과 동일하게 불리해질 수 있다.

② 자료 제출 요구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진술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피조사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입증 책임의 전환 및 증거 우위 원칙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내용은 “6-3 검증원칙”(제17조)에 연결된다.)

③ 증거 보전 조치

-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서도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심으로부터 결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로 전환된다. (이 내용은 “6-3 검증원칙”(제17조)에 연결된다.) 피조사자가 자료를 훼손, 은폐, 파기하거나, 증거물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자의 연구기관 출입 제한 및 증거 자료의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연구기관 출입 제한 및 증거 관련 자료의 이용 제한은 피조사자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증거 보전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재 조치 건의

-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수행을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최종 판정될 경우, 습득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피조사자에 대해 적합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당사자가 속한 해당 연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자체 규정을 근거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연구비 회수,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적합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 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개정 지침에서는 외부 검증기구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를 배제한다.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검증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지침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를 검증기구로부터 배제하고, 이외의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둘째,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있어서 해당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있어서 “제28조(재조사)”에 따라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연구기관 조사위원회 이외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넷째,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이외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1. 검증절차 | 104
- 2. 예비조사 | 106
- 3. 본조사 | 110
- 4. 판정 | 112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개정 지침의 기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기본으로 하며, 이의신청과 재조사를 추가할 수 있다(세분화하면 예비조사, 이의신청,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 재조사 등 6단계가 될 수 있음).

예비조사: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조사 착수 여부 결정

본조사: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검증

판정: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과 조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속화 조치(fast track)”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②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본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 적발 또는 제보 시, 1차적인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연구자(피조사자)가 속한 전문기관 및 대학등 해당 연구기관에 설치된 자체 조사위원회에 있다.

연구 수행 당시와 현재 시점 사이에 피조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다를 경우, 검증 주체는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이며, 피조사자의 현재 소속 기관은 이전 소속 기관의 협조 요청(피조사자의 조사위원회 출석, 검증절차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8조 제4항은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집을 발간한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알려짐으로써 연구부정행위 결과가 계속하여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고, 연구부정행위자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한 연구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2. 예비조사 (제19조)



제19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예비조사의 의의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 제보에 대해 본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본조사가 가급적 단시간 내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요건(조사의 적합성, 시효의 적절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제보들이 곧바로 본조사에 회부될 때 발생하는 조사위원회의 과부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검증의 운용상 효율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예비조사 검토사항

조사의 적합성(제보 내용이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본 개정 지침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험자의 인권 및 생명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연구비 유용 및 장비 관리 불량 등 본 지침의 범위 이외의 연구부정 또는 연구부적절 행위 사안은 해당 주제의 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단,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연구비 부정 수급 및 중복 수혜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본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시효의 적절성(연구부정행위 발생 시기에 따른 지침 적용 가능성 검토)

이 개정 지침은 발표 시점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조”). 단, 이 지침의 발표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지침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정확한 시점은 연구자 본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결과물의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부정행위 자체의 발생 시점이 이 지침의 발표일 이전이라도, 그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한 연구결과물이 이 지침의 발표일 이후에 발표되었다면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내용은 “6-2 검증 시 적용지침”에 연결된다.)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본조사가 원활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제보자의 제보는 연구부정행위 피조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서 어떤 유형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여 명예 훼손을 피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연구 결과물을 직접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제보들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예비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정확한 검증은 본조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보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증거자료도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 요건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 주체 및 관련자의 소속과 실명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결과물
- 부정행위의 유형, 내용 및 발생 시기

예시 1

A대학 생명과학부 ○○○ 교수는 ⇒ **관련자 실명, 소속**
 2015년 6월 중순 B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에 자신의 실험실에서 ⇒ **발생 시기**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실험을 수행하던 중 ⇒ **해당 연구과제**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음 ⇒ **부정행위 유형**

예시 2

서울태양광에너지연구소 △△△ 연구원이 ⇒ **관련자 실명, 소속**
 2015년 3월 1일 ⇒ **발생 시기**
 [대한태양광학회지에 발표한 “태양광 수집 장비 개발공정”에 관한 논문은 ⇒ **해당 연구결과물**
 일본 호카이도 대학 야마구치 교수의 논문 “태양광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표절한 것임
 ⇒ **부정행위 유형**

그러나 익명 제보의 경우 위의 제보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향후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제보자의 추가 진술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투서 성격의 제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제보의 내용은 바로 본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

이 개정 지침에서는 예비조사의 경우 본조사와 달리 조사기구의 구성이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예비조사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 진실성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예비조사의 기간

연구기관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예비조사 착수 기간과 수행 기간을 자체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개정 지침 제24조는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판정까지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사 기간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비조사 결과 통보

예비조사 종료 후 해당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조사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기관이 제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기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비조사 결과 이의신청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5조 1항). 대부분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제보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해당 연구기관이 직접 예비조사를 수행하지만,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제32조(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외부 기관이 예비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장”이 아니라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였다. 만약 제보자가 실제 조사를 수행한 기관을 알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 문의를 하고, 해당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3. 본조사 (제20조)



제20조(본조사)

-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사의 의의

본조사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 및 관련자들의 연구실 출입 통제, 조사위원회 출석 소환 등 피조사자 및 관련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조사 세부 단계

- 조사단계:**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과의 면담 및 자료 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
- 변론단계:**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청구 단계
- 결정단계:**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 교육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 80의 흐름도를 개정된 지침에 맞게 수정함

본조사위원회 구성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9조 1항), 본조사 기구는 본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본조사 수행의 방법

“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다.

이의제기와 변론 기회의 제공 및 기록, 보고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이전에 반드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의제기 및 소명 등 변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제20조 2항”). 이는 판정 이후의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재조사 수행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진실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잘못된 조사 결과의 확정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판정 이전의 최종 이의제기 및 소명은,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대로 판정 단계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본조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만약 최종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새로운 조사내용을 조사결과에 추가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한다. 교육부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과 이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제29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는 조사위원회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의제기 및 소명을 자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4. 판정 (제24조, 제25조)



제24조(판정)

-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의 의의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판정 단계가 종료되면 연구기관은 조사결과를 임의로 반복할 수 없으며, 차후 조사결과와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양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정의 기한

판정은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정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조사 절차가 가급적 신속하게 종료되도록 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시간과 비용 상의 손실, 연구실 출입과 연구 관련 자료 사용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 해당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복잡성과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판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 제보사실 이관 기관(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해당 연구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5조(이의신청 등)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통보 및 이의 제기

예비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예비조사 결과, 연구기관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사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제보자에게 그 사실만을 통보하여도 무방하며, 본조사가 기각되었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본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조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리 또는 기각을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리가 결정되면 연구기관 자체 재조사와 판정이 수행되며, 기각이 결정되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8조(재조사)”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28조(재조사)”는 “제25조(이의신청)”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이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기관 및 조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가 교육부에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급적 중앙 정부 기관이 아닌 개별 연구기관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판정 효력의 성립을 위한 요건

이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있어서 그 효력의 조건으로 조사위원의 “과반수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 “만장일치” 등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나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해당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한다.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116
-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 117
- 3.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 120
-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 123
-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 125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신설된 것으로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하여 판정 및 이의신청 결과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조치 이외에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등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예로는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연구 결과물의 교정 및 철회, 공개 사과, 현재와 향후 연구 활동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이 있다. 이는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등이 내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내부 규정과 법령,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학등 개별 기관 내부의 공모나 묵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가 방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의 범위

제31조 제1항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이라 함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 1) 예비조사·본조사·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 2)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증인과의 면담 내용
- 3)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 4) 전화·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
- 5) 제보자·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내용
- 6) 전문가 검토·자문의견
- 7) 예비조사·본조사 결과보고서

기록 보존의 이유

- 조사의 투명성·책임성·신뢰성 제고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시 재조사 과정에서 활용
-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책 수립시 활용
-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의 공유를 통한 향후 연구부정행위에 체계적 대응
- 연구부정행위의 현황 파악과 검증 과정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유형 정립 및 효율적인 검증 방법 도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정보의 공개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비공개 사항을 명심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 이후에 공개한다. 이는 조사 진행 과정 또는 판정 이전에 조사 결과나 조사 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보고서 공개 시에는 신원정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신원 정보는,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피해를 입은 측이 보복 등을 목적으로 알고자 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타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해당 사안의 전문가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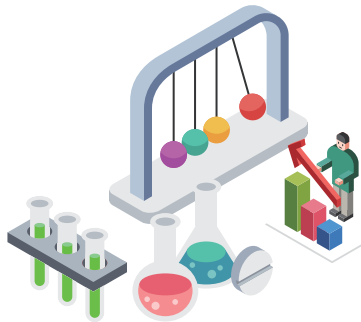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연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예를 들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의 특징에 관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위원의 실명은 연구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성별, 나이, 직위 정도만 공개한다).

증인, 참고인, 자문인의 악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명예훼손 고소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진술을 한 자의 실명을 요구할 경우, 요구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장 최선의 예방책은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단계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다.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 내부, 상급 기관, 교육부 및 언론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9조 3항”).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 위반사실 확인 후 사법당국,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관련기관 및 경찰에 즉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관 내부 및 언론 등에 공개한다.
-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3.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제29조(조사결과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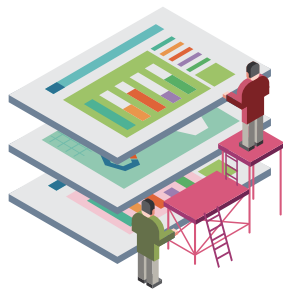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의의

교육부는 각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정직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교육부는 연구기관 자체의 검증 결과 보고를 통해 소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 회수 및 시점

보고 회수는 예비조사만을 수행한 경우(본조사 기각)는 1회, 본조사를 수행한 경우는 2회(예비조사 결과, 본조사 결과)이다. 예비조사 결과는 예비조사 완료 후, 본조사 결과는 판정 후 각각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전 지침에는 10일 이내였으나, 연구기관이 조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실 확인과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 가. 제보의 내용
누가(익명 기재 요망),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 등을 제보하는지 간략하게 요약
- 나. 조사결과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유형 및 세부내용 등과 그 진위 여부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사유(시효의 적절성, 제보내용 및 증거자료의 구체성·명확성 등에 따른 본조사 수행 필요성 여부 기재) 등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본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성명/성별/나이/전공/직위 등 기재)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에서 맡은 역할과 참여도,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과 피조사자와의 관련성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연구부정행위 혐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물, 진술 및 면담내용 등 조사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의 신원정보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본조사 과정에서 판정 이전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 및 변론내용과 이를 검토하여 최종 조사결과에 반영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제26조, 제30조)

후속조치의 종류(제26조, 제30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가 취하는 조치(제30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그 밖에 대학등 연구기관 자체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과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취하는 조치(제2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로 구분된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는 제30조와 제26조가 모두 적용되며, 그 밖의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는 제26조만 적용된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제30조는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한다.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연구기관 자체검증 이후 교육부의 역할(제30조 2항)

교육부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판정 후 30일 이내)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조사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제30조 1항)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만 적용된다.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 1)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 2)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 3)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대학등 연구기관의 징계 요구
- 4)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학등 연구기관의 자체 후속조치

대학등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침의 “제3조(적용 범위)”에 근거하여,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이 지침을 직접 적용하거나, 이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혹을 검증하여 판정 및 이의신청 결과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조치 이외에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다.

대학등의 장은 연구기관 자체의 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원인이 되는 과실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 조치 사이에 적절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등의 주요 관계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친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유약하거나 강경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28조(재조사)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개인의 후속조치(재조사)

“제19조(예비조사)”에 따라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제20조(본조사)”에 따른 본조사 결과도 예비조사에 준하여 조사 종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25조(이의신청)”에 따라 연구기관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5조(이의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연구기관 조사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기관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후 수리 또는 대학등 연구기관의 판정 절차나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재조사 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APA Style, "Quick Answers- References", <http://www.apastyle.org/learn/quick-guide-on-references.asp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Chicago Manual of Style, "Chicago-Style Citation Quick Guide", http://www.chicagomanualofstyle.org/tools_citationguide.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Ping Sun, "China's Efforts for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AAAS Professional Ethics Report, Vol. XXIII, No. 4, Fall 2010.
-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 http://eng.korea.ac.kr/down/pdf/rules/03_3/3-3-16c.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교육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http://web.dongseo.ac.kr/~sanhak/img/sub04_05.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대한민국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22#0000>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00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미국 ORI Historical Background, <http://ori.hhs.gov/historical-background>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미국 ORI 관련 법령 규정 "42 CFR Part 50" 및 "42 CFR Part 93"의 원문, https://ori.hhs.gov/sites/default/files/42_cfr_parts_50_and_93_2005.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연구윤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no=1384633>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no=1383958>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영국 UKRIO information, <http://www.ukrio.org/wp-content/uploads/UKRIO-leaflet-2013-web-version.pdf> (검색일: 2015년 2월 20일).
- 영국 UKRIO 연구부정행위 규정 조항, <http://www.ukrio.org/publications/code-of-practice-for-research/3-0-standards-for-organisations-andresearchers/3-16-misconduct-in-research/>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영국 브리스톨대학 연구윤리 정책 및 규정, <http://www.bristol.ac.uk/secretary/studentrulesregs/researchmisc.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 가이드라인,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이원용(2010),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 연구", 한국연구재단.

- 이인재(2007),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인재(2008),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 한국연구재단.
- 이인재(2008),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 6권, pp.129-159.
- 이인재(2011), “바람직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Endocrinol Metab 26(1): 12-24, March 2011.
- 이인재(2012), “연구윤리활동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인재(2013),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 이인재(2015),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 일본 SCJ 발표 연구진실성 규정,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0-s3e-1.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일본 SCJ 연구진실성 진흥 노력, <http://www.scj.go.jp/en/report/code.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일본 문부과학성(2014),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8/1351568.htm, 영문판 <http://www.mext.go.jp/english/topics/1360017.htm>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정희모(2008), 『대학 글쓰기』, 서울: 삼인.
- 조화희(2006),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캐나다 PRCR 소개, <http://www.rcr.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캐나다 PRE 소개, <http://www.pre.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캐나다 연구진실성 규정 “Tri-agency Framework”의 “3. Breaches of Agency Policies by Researchers” 및 “4.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참조, <http://www.rcr.ethics.gc.ca/eng/policy-politique/framework-cadr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한국연구재단(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한국연구재단(2014),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 호주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https://www.nhmrc.gov.au/_files_nhmrc/publications/attachments/r39.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호주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및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들, <http://www.nhmrc.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0>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호주 ARIC, <http://www.arc.gov.au/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arc> 및 <http://www.nhmrc.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부 록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 132
-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 144
-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 158



부 록

부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교육부 훈령 제 153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정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관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 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뢰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관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주요 개정 사항

기 존	개 정	비 고	주요내용
1조(목적)	1조(목적)	개정	연구부정행위 방지 목적 추가
	2조(정의)	신설	주요 용어 정의
2조(적용대상)	3조(적용대상 및 방법)	개정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교육부이외 정부기관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3조(적용범위)	4조(적용범위)	유지	-
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개정 (확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설명 구체화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 신설
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개정 (분리)	기준안을 분리하여 세분화
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지	-
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삭제 (타 조항으로 계승) 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항 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항	삭제	-
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개정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선정자의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 신설
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개정	자체규정의 포함 사항으로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추가
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28조(재조사) 2항	개정 (분리)	내용 분리 및 위치조정
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유지	-
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유지	-
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개정 (분리)	내용 분리 및 위치조정 13조의 전문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명확화

기 존	개 정	비 고	주요내용
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개정 (분리)	구체적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제시
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개정	일부 항의 타조항 (제16조 제2항) 설치로 삭제
16조(예비조사)	19조(예비조사)	유지	-
17조(본조사)	20조(본조사)	유지	-
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개정	조사위원 중 연구분야 전문가에 외부 전문가 포함 규정
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유지	-
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유지	-
21조(판정)	24조(판정)	유지	-
22조(이의신청 등)	25조(이의신청 등) 28조(재조사)	개정 (분리)	재조사 요청을 이의신청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 및 30일의 재조사 요청기간 설정
23조(조사결과외의 제출)	29조(조사결과외의 제출)	개정	대학 등의 조사결과 제출을 조사종료 후 30일 이내로 연장 (기존 10일)
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 개정	후속조치에 학술진흥법 상 근거 명시
	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자체 조치 규정
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유지	-
26조(업무의 위탁)	32조(업무의 위탁)	유지	-
27조(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요청)	삭제	삭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조항으로서 삭제
28조(재검토 기한)	33조(재검토 기한)	유지	-
부칙 1조(시행일)	부칙 1조(시행일)	유지	-
	부칙 2조(소급 적용)	신설	지침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 소지 제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개정 신·구 대비표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순서조정 • 연구윤리의 확보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함
<p>< 신설 ></p>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를 통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명확화
<p>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p> <p>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p> <p>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한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도내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정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기존 지침 대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 자체적 지침 없는 경우, 자체연구 활동도 교육부 이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활동에도 직접 적용 가능 • 적용방법: 적용대상에 따라 '적용한다'와 '준용할 수 있다'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적용 방식에서 '준용할 수 있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

기 존	개 정	비 고
<p>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p>	<p>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p>	
<p>제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 연구기관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을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p> <p>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5조를 개정 제5조(연구자), 제6조(대학 등), 제7조(전문기관)로 분리하여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6조를 개정 제5조(연구자), 제6조(대학 등), 제7조(전문기관)로 분리하여 세분화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기 존	개 정	비 고
<p>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7조를 개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항의 5호, 6호, 7호에 반영되어 있으며, 개정 제1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더욱 구체적인 제약 기술
<p>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p>	<p>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8조 제1항의 '연구윤리 교육 실시 의무'는 개정 제5조 제9항, 제7조 제2항의 대학과 전문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로 조정 • 교육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를 신설
<p>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 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p>	<p>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항목 추가 • 기존 제8조 제2항은 개정 제3조(적용 대상 및 방법)에 적용대상별 적용 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기 존	개 정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p>② 자체규정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p>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윤리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p>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p>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제조사 요청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관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기관 등의 장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경우 	<p>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3항은 개정 제28조(재조사) 제2항으로 대체 (내용 위치 조정)

기 존	개 정	비 고
<p>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p>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정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히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은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제3호 '표절' 항목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 제4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항목'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용어를 수정하고, 3가지 유형으로 설명 제5호에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 신설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p> <p>④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p>	<p>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p> <p>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은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p>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4조 제4항을 별도 분리하고,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제시
<p>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p> <p>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p> <p>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p>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p> <p>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p>	<p>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p> <p>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p> <p>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p>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p> <p>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p> <p>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기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p> <p>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p> <p>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기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p> <p>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p> <p>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p> <p>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 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p> <p>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p> <p>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3조 제2항은 개정 제27조로 이동 • 개정 제16조 제2항의 "조사위원회"라는 기존 제15조 제2항에서 이동
<p>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p> <p>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있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p> <p>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있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p> <p>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p> <p>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p>	<p>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p> <p>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p> <p>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p> <p>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5조 제4항 제②항은 유지(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 기존 제2항은 개정 제16조 제2항 설치로 삭제
<p>제16조(예비조사)</p> <p>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관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p> <p>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p> <p>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p>	<p>제19조(예비조사)</p> <p>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p> <p>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p> <p>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p>	
<p>제17조(본조사)</p> <p>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0조(본조사)</p> <p>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p>	<p>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8조 제1항 단서 삭제 • 조사 위원 중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p>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p> <p>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p> <p>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p> <p>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p>	<p>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p> <p>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21조(판정)</p> <p>① 판정은 해당기관의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4조(판정)</p> <p>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2조(이의신청)</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5조(이의신청)</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 기존 제22조 제2항은 개정 제28조(재조사)로 조정</p>
<p>〈 신설 〉</p>	<p>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p> <p>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최종적으로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조치 이외에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개별 기관 내부의 공인·목적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의 방조 방지)</p>
<p>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p> <p>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p> <p>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 조사가 곤란한 경우</p> <p>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p> <p>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p>	<p>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p> <p>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p> <p>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p> <p>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p>	<p>· 기존 제13조 제2항의 전문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으로 명칭</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22조(이의신청)</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재조사)</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p>	<p>· 기존 제22조 제2항의 이의신청과 별도로 가능한 재조사 요청을 이의신청을 가친 후 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수령 후 30일의 재조사 요청기한 설정</p> <p>· 개정 제28조 제2항은 기존 제10조 제3항을 이동·조정</p>
<p>제23조(조사결과와 제출)</p> <p>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p>1. 제보의 내용</p> <p>2. 조사결과</p> <p>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p> <p>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p> <p>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p> <p>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p> <p>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p> <p>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p> <p>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 사항</p> <p>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p> <p>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p>	<p>제29조(조사결과와 제출)</p> <p>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p> <p>1. 예비조사의 경우</p> <p>가. 제보의 내용</p> <p>나. 조사결과</p> <p>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p> <p>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p> <p>2. 본조사의 경우</p> <p>가. 제보의 내용</p> <p>나. 조사결과</p> <p>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p> <p>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p> <p>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p> <p>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p> <p>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p> <p>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p> <p>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p> <p>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p>	<p>· 기존 제23조 제1항의 조사결과 제출이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10일의 기간이 확보되는 대학의 요구 반영)</p> <p>·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항목이 "예비 조사의 경우"와 "본조사의 경우"로 구분되어 상세화</p>

기 준	개 정	비 고
<p>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 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26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과 관련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후속조치 및 조사, 제25조제1항과 관련한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7조(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요청) 교육부장관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삭제</p>	<p>•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및 권한에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삭제</p>
<p>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p>	<p>• 부칙 제2조 신설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따르게 함으로써, 지침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의 소지 제거</p>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³⁰⁾

I. 올바른 인용

인용의 의미와 목적

일반적으로 인용은 인용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학술 연구에서 인용과 표절은 상반된 개념으로,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정희모, 2008:229).

- ▶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 ▶ 공동되거나 상반되는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전자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이다.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보고서 작성 때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이다. 인용은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credit)을 한다는 표시이며, 표절의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저자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을 쉽게 해주며,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을 할 때 적절하게 해야 한다.

30) 이인재(2015), pp. 288-311을 활용함

◆ 인용의 원칙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을 쓸 때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되 그것이 공정한 이용(fair use)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정한 이용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 ▶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 ▶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올바른 인용 방식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인용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가 착안해 낸 단어나 어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서 참고했거나 따온 것인지를 정당한 방식으로 밝혀, 원저작자에게 진 빚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고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것에 대한 통상적인 합의가 바로 인용이다. 이처럼 인용은 글을 쓸 때 원저작자에게 진 빚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감사)하는(acknowledge indebtedness) 정당한 방법인 것이다.

연구자가 알고 지켜야 할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 ▶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출처표시의 원칙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출처표시의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대학 및 학술 단체가 정한 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동일한 논문이나 책 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 ▶ 논문이나 단행본에 인용된 내용의 기본적인 서지사항들(저자명/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또는 학술지의 권, 호수, 출판연도, 페이지)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한다.
- ▶ 가급적 1차문헌(원문)을 인용하되, 불가피하게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고 인용하게 되었을 경우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연구자가 글을 쓸 때, 2차 문헌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원문의 내용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보고 특히 2차 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예를 들면,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 문헌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등) 원문과 2차 문헌의 출처표시를 모두 해야 한다. 왜냐하면 2차 문헌의 저자를 통해 원문을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2차 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표시로 2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바꿔쓰기를 위한 제안〉

◎ 말바꿔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안

- 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 필자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 말바꿔쓰기의 기본 원칙

- 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 원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저자는’~‘주장한다. 설명한다’ 등으로 나타낸다.

II. 인용 방법

연구자는 논문을 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정당한 활용일 때 한해서이다.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을 정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용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표절 의혹을 받게 된다. 표절 의혹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인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용을 해야 할까? 인용 방법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은 타인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하며, 큰 따옴표로 인용문을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용 분량이 3~4 줄 이상으로 길 경우,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바꾸어 인용된 문단임을 나타낸 후(indentation),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시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란, 전문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좋은 시민 정신이라 요약·정의할 수 있다."

1) 홍길동 외 3명, <연구윤리 소개>, 교육인적자원부, 2006, p. 3.

간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잘 소화하여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으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부분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 견해에 따르면, -의 견해를 정리하면, 혹은 -는 이라고 말한다.'와 같이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시 홍길동 외 3명에 따르면, 책임 있는 연구수행이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 전문적 영역의 좋은 시민 정신이라 한다.

1) 홍길동 외 3명, <연구윤리 소개>, 교육인적자원부, 2006, p. 3.

III.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방법: 시카고 스타일과 APA 방식을 중심으로

논문이나 단행본의 본문에서 활용된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문헌에서 그 서지사항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직·간접 인용과 참고문헌에 사용되는 출처표시 방법을 시카고 스타일과 APA 방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인용문과 참고문헌의 출처표시 방법은 해당 학문 분야와 연구자가 선호하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저자명, 저서(논문)명, 출판사, 출판연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A. 시카고 스타일의 인용 표시법³¹⁾

가.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방식(인문학에서 주로 이용)

외국인 저자 이름은 각주에서는 '이름+성'으로 표시하고, 참고문헌에서는 '성+이름'으로 표시함에 유의한다. (참고문헌 목록을 성 순서로 정렬하기 위함이다.)

책이름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1)"은 처음 인용할 때, "2)"는 다시 인용할 때를 나타낸다.

처음 인용할 때는 full name을 밝히고, 다시 인용할 때는 성(last name)만 밝힌다.

1. 저자 1명

저자이름, 책이름, (도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1) Michael Pollan,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2006), 99-100.

2) Pollan, *Omnivore's Dilemma*, 3.

참고문헌 표시방식:

Pollan, Michael.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2006.

31) Chicago Manual of Style 웹사이트(www.chicagomanualofstyle.org)의 "Chicago-Style Citation Quick Guide" 문서를 참고함

2. 저자 2명

저자이름 and 저자이름, ...

- 1)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52.
- 2) Ward and Burns, *The War*, 59–61.

참고문헌 표시방식:

Ward, Geoffrey C.,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3. 저자 3명

저자이름, 저자이름 and 저자이름, ...

- 1) Michael Pollan,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52.
- 2) Pollan, Ward and Burns, *The War*, 59–61.

참고문헌 표시방식:

Pollan, Michael,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4. 저자 4명 이상

대표 저자 1명만 이름을 밝히고, “et al.”을 붙인다.

- 1) Dana Barnes et al., *Plastics: Essays on American Corporate Ascendance in the 1960s...*
- 2) Barnes et al., *Plastics...*

참고문헌 표시방식:

Barnes, Dana, et al., *Plastics: Essays on American Corporate Ascendance in the 1960s...*

5. 원저자를 알 수 없는 편집서, 번역서

편집자, 번역자의 이름만 밝히고, “ed.” 또는 “trans.”를 붙인다.

- 1) Richmond Lattimore, trans., *The Iliad of Ho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91–92.
- 2) Lattimore, *The Iliad of Homer*, 24.

참고문헌 표시방식:

Lattimore, Richmond, trans. *The Iliad of Ho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6. 원저자를 알 수 있는 편집서, 번역서

원저자의 이름과 책제목을 먼저 밝히고, 편집자나 번역자는 나중에 밝힌다. 편집자나 번역자의 이름 앞에는 “ed.” 또는 “trans.”를 붙인다.

- 1) Gabriel Garcia-Marquez,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s. Edith Grossman (London: Cape, 1988), 242–55.
- 2) Garcia-Marquez, *Love in the Time of Cholera*, 33.

참고문헌 표시방식:

Garcia-Marquez, Gabriel.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slated by Edith Grossman. London: Cape, 1988.

7. 책(또는 논문집)의 일부분(소논문, 장 또는 절)을 인용

소논문 저자의 이름과 제목을 먼저 밝히고, 책이름과 총괄 편집자는 나중에 밝힌다. 총괄 편집자의 이름 앞에는 “ed.”를 붙인다.

- 1) John D. Kelly, “Seeing Red,”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 John D. Kelly et 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77.
- 2) Kelly, “Seeing Red,” 81–82.

참고문헌 표시방식:

Kelly, John D. “Seeing Red.”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ited by John D. Kelly, Beatrice Jauregui, Sean T. Mitchell, and Jeremy Walton, 67–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위 사례를 보면, ‘각주 1)’에서는 논문의 77페이지만을, ‘각주 2)’에서는 논문의 81–82 페이지만을 인용했음을 밝혔고, ‘참고문헌’에는 인용된 논문의 전체 분량이 책(또는 학술지)의 67–83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8. 여러 권으로 구성된 전집(全集)의 일부를 인용할 때

원저자, 원제목, 전집제목, 전집 편집자,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등으로 밝힌다.

- 1) Quintus Tullius Cicero,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35.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위 사례를 보면 John Boyer와 Julius Kirshner가 편집한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라는 전집이 있고, 이 중 2권이 Walter Emil Kaegi Jr.와 Peter White가 편집한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라는 책이며, 이 책 안에 Cicero가 저술한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Cicero,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35.

참고문헌 표시방식:

Cicero, Quintus Tullius.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ited by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ited by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33–4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Originally published in Evelyn S. Shuckburgh, trans., *The Letters of Cicero*, vol. 1 (London: George Bell & Sons, 1908).

위 사례를 보면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는 *The Letters of Cicero*의 재인용임을 알 수 있다.

9. 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 써준 서문, 해설, 추천사 등을 인용할 때

- 1) James Rieger,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xx–xxi.
- 2) Rieger, introduction, xxxiii.

참고문헌 표시방식:

Rieger, James.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xi–xxxv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위 사례를 보면 ‘각주 1)’에서는 서평 가운데 xx–xxi페이지만을 인용했고, 서평 자체는 xi–xxxvii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10. 전자책 또는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때

전자책이나 인터넷 자료는 페이지를 표시하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 형태와 인터넷 주소(URL), 인터넷 접속일자, 인용된 부분의 장과 절 등을 밝혀준다.

- 1)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7), Kindle edition.
- 2) Austen, *Pride and Prejudice*.

참고문헌 표시방식: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7. Kindle edition.

- 1) Philip B. Kurland and Ralph Lerner, eds.,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
- 2) Kurland and Lerner, *Founder's Constitution*, chap. 10, doc. 19.

참고문헌 표시방식:

Kurland, Philip B., and Ralph Lerner, eds.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

11. 학술지 논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호수, (발행연도), 페이지 수 순으로 밝힌다.

- 1) Joshua I. Weinstein,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 (2009): 440.
- 2) Weinstein, “Plato’s Republic,” 452–53.

참고문헌 표시방식:

Weinstein, Joshua I.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 (2009): 439–58.

12. 전자 출판된 학술지의 논문

전자 출판된 학술지는 DOI라는 고유 인터넷 주소를 가지므로, 논문의 DOI 주소와 인터넷 접속날짜를 밝힌다.

- 1) Gueorgi Kossinets and Duncan 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11,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 2) Kossinets and Watts, “Origins of Homophily,” 439.

참고문헌 표시방식:

Kossinets, Gueorgi, and Duncan 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05–50.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13. 신문기사 또는 잡지의 기사를 인용할 때

필자, “기사제목-큰따옴표”, 신문이름-이탤릭, 발행일자, 페이지 수.

- 1) Daniel Mendelsohn, “But Enough about Me,” *New Yorker*, January 25, 2010, 68.
- 2) Mendelsohn, “But Enough about Me,” 69.

참고문헌 표시방식:

Mendelsohn, Daniel. “But Enough about Me.” *New Yorker*, January 25, 2010.

14. 전자 출판된 신문기사 또는 잡지의 기사를 인용할 때

필자, “기사제목-큰따옴표”, 신문이름-이탤릭, 발행일자, 인터넷 접속날짜, URL 주소.

- 1) Sheryl Gay Stolberg and Robert Pear,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10,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 2) Stolberg and Pear, “Wary Centrists.”

참고문헌 표시방식:

Stolberg, Sheryl Gay, and Robert Pear.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10.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15. 서평(book review)을 인용할 때

서평자, “서평 제목”, 대상 도서, 서평 출처, 발행일자, 페이지 수 또는 섹션, URL 주소...

- 1) David Kamp, “Deconstructing Dinner,” review of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by Michael Pollan, *New York Times*, April 23, 2006, Sunday Book Review, <http://www.nytimes.com/2006/04/23/books/review/23kamp.html>.
- 2) Kamp, “Deconstructing Dinner.”

참고문헌 표시방식:

Kamp, David. “Deconstructing Dinner.” Review of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by Michael Pollan. *New York Times*, April 23, 2006, Sunday Book Review. <http://www.nytimes.com/2006/04/23/books/review/23kamp.html>.

16. 학위논문 인용

저자, “논문 제목”, (종류, 발행기관, 발행연도).

- 1) Mihwa Choi,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 2) Choi, “Contesting Imaginaires.”

참고문헌 표시방식: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17. 회의 proceeding 자료 인용

저자, 글 제목 (발표 회의, 장소, 발표 날짜).

- 1) Rachel Adelman,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New Orleans, Louisiana, November 21–24, 2009).
- 2) Adelman, “Such Stuff as Dreams.”

참고문헌 표시방식:

Adelman, Rachel.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New Orleans, Louisiana, November 21–24, 2009.

18. 인터넷 자료 인용

인터넷 자료는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내용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를 알 수 있으면 저자를 적시하고, 알 수 없으면 글의 제목을 적시한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last modified date)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적시하고, 알 수 없으면 글쓴이가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날짜를 적시한다.

- 1) “Google Privacy Policy,” last modified March 11, 2009, <http://www.google.com/intl/en/privacypolicy.html>.
- 2) “Google Privacy Policy.”
- 3)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McDonald’s Corporation, accessed July 19, 2008,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 4)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참고문헌 표시방식:

Google. “Google Privacy Policy.” Last modified March 11, 2009. <http://www.google.com/intl/en/privacypolicy.html>.
 McDonald’s Corporation.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Accessed July 19, 2008.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19. 블로그/인터넷 자료에 대한 코멘트 또는 댓글을 인용

글쓴이가 누구의 블로그에, 어떤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명시한다. 댓글 필자, 댓글 올린 날짜, 댓글의 대상이 되는 블로그 주인, 블로그 게시물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 게시물 날짜, 인터넷 주소..

- 1) Jack, February 25, 2010 (7:03 p.m.), comment on Richard Posner, "Double Exports in Five Years?," The Becker-Posner Blog, February 21, 2010, <http://uchicagolaw.typepad.com/beckerposner/2010/02/double-exports-in-five-years-posner.html>.
- 2) Jack, comment on Posner, "Double Exports."

참고문헌 표시방식:

Becker-Posner Blog, The. <http://uchicagolaw.typepad.com/beckerposner/>.

20.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인용

'참고문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편지 보낸 이, 편지의 제목 또는 성격, 편지 보낸 날짜.

- 1) John Doe, e-mail message to author, February 28, 2010.

21.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인용

저자, 글제목, 발행기관,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일련번호).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ProQuest (AAT 3300426).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나. 저자-연도 우선 표시 방식 (이공계,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용)

- 글 말미에 참고문헌을 표시할 때는 저자, 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순으로 하고, 글 안에서는 '내주' 형식으로 표시한다. 내주는 (저자의 성, 발행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시한다. 앞뒤에 괄호를 묶어 표시한다.
- 참고문헌에서 저자 이름은 '성+이름' 순으로 한다.
- 저자 이름 뒤에는 연도가 가장 중요하며, 월/일 등은 뒤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 다음 각 항목에서 첫 번째 사례는 참고문헌에 표시할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로 앞뒤에 괄호로 묶어 표시된 것은 글의 본문 안에서 '내주'로 표시될 경우이다.

1. 저자 1명

Pollan, Michael. 2006.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Pollan 2006, 99-100)

2. 저자 2명

제1저자는 '성+이름' 순으로, 제2저자는 '이름+성' 순으로 표시한다.
Ward, Geoffrey C., and Ken Burns. 2007.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Ward and Burns 2007, 52)

3. 저자 3명

제1저자는 '성+이름' 순으로, 제2저자와 제3저자는 '이름+성' 순으로 표시한다.
Ward, Geoffrey C., Michael Pollan and Ken Burns. 2007.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Ward, Pollan and Burns 2007, 52)

4. 저자 4명 이상

제1저자 뒤에 'et al'로 표시한다.
(Barnes et al. 2010)

5. 원저자를 알 수 없고, 편집자, 번역자가 있는 경우

원저자(성+이름), trans. 또는 ed. 발행연도. 제목. 발행기관.
Lattimore, Richmond, trans. 1951. *The Iliad of Ho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ttimore 1951, 91–92)

6. 원저자를 알 수 있고, 편집자, 번역자가 있는 경우

원저자(성+이름). 발행연도. 제목. 편집자 또는 번역자(이름+성). 발행기관.
Garcia-Marquez, Gabriel. 1988.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slated by Edith Grossman. London: Cape.
(Garcia-Marquez 1988, 242–55)

7. 책(또는 논문집)의 일부분(소논문, 장 또는 절)을 인용하는 경우

논문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책제목. 총괄 편집자(이름+성). 논문의 전체 페이지. 발행기관.
Kelly, John D. 2010. “Seeing Red.”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ited by John D. Kelly, Beatrice Jauregui, Sean T. Mitchell, and Jeremy Walton, 67–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elly 2010, 77)

8. 여러 권으로 구성된 전집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부분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부분 제목. 책(날권) 제목. 책(날권) 편집자(이름+성). 전집 제목. 전집 편집자(이름+성). 인용된 부분의 전체 페이지수. 발행기관. 기사사항...
Cicero, Quintus Tullius. 1986.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ited by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ited by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33–4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Evelyn S. Shuckburgh, trans., *The Letters of Cicero*, vol. 1 (London: George Bell & Sons, 1908).
(Cicero 1986, 35)

9. 책의 원저자와 다른 사람이 써준 서문, 해설, 추천사 등의 인용

서문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책 제목. 책 저자(이름+성). 페이지수. 출판사.
Rieger, James. 1982.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xi–xxxv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eger 1982, xx–xxi)



10. 전자출판된 책의 인용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제목. 발행기관. 전자출판의 형태. URL 주소.
Austen, Jane. 2007.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Classics. Kindle edition.
(Austen 2007)

제1저자는 ‘성+이름’으로, 제2저자는 ‘이름+성’으로 표시한다.
Kurland, Philip B., and Ralph Lerner, eds. 1987.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
(Kurland and Lerner, chap. 10, doc. 19)

11. 학술지 논문 인용

논문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회수: 전체 페이지수.
Weinstein, Joshua I. 2009.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439–58.
(Weinstein 2009, 440)

12. 인터넷 또는 전자 출판된 학술지 논문 인용

전자 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DOI 번호를 부여받는다.
논문 저자(제1저자는 성+이름, 제2저자는 이름+성).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회수: 전체 페이지 수. 접속날짜. DOI 번호.
Kossinets, Gueorgi, and Duncan J. Watts. 2009. “Origins of Homophilia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405–50.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Kossinets and Watts 2009, 411)

13.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인용

글쓴이(성+이름). 발행연도. “기사제목”. 신문제목. 발행날짜.
Mendelsohn, Daniel. 2010. “But Enough about Me.” *New Yorker*, January 25.
(Mendelsohn 2010, 68)

14. 전자 출판된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인용

글쓴이(성+이름). 발행연도. “기사제목”. 신문제목. 발행날짜. 인터넷 접속날짜. URL 주소.
Stolberg, Sheryl Gay, and Robert Pear. 2010.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Stolberg and Pear 2010)

15. 서평 인용

서평자(성+이름). 발행연도. “서평제목”. 대상이 된 책의 제목. 대상이 된 책의 저자. 서평이 실린 신문 제목. 발행날짜. 페이지 수 또는 섹션. URL 주소.

Kamp, David. 2006. “Deconstructing Dinner.” Review of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by Michael Pollan. *New York Times*, April 23, Sunday Book Review. <http://www.nytimes.com/2006/04/23/books/review/23kamp.html>. (Kamp 2006)

16. 학위논문 인용

논문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발행기관.

Choi, Mihwa. 2008.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Choi 2008)

17. 회의 등의 proceeding 자료 인용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글 제목”. 발표된 회의에 대한 설명. 장소. 발표일자(회의기간). Adelman, Rachel. 2009.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New Orleans, Louisiana, November 21–24.

(Adelman 2009)

18. 인터넷 자료 인용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은 저자나 글을 쓴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이 올라온 사이트(사이트의 공식 운영주체)가 글의 저자를 대신하며, 글이 쓰여진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적시하되, 알 수 없다면 “글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last modified date),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날짜를 적시한다.

Google. 2009. “Google Privacy Policy.” Last modified March 11. <http://www.google.com/intl/en/privacypolicy.html>. (Google 2009)

McDonald’s Corporation. 2008.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Accessed July 19.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McDonald’s 2008)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19. 블로그 코멘트 또는 댓글의 인용

댓글 작성자(성+이름). 댓글 작성연도. 댓글이 달린 블로그의 글제목. 댓글이 달린 블로그 전체 제목. 댓글 작성일자. URL 주소.

Posner, Richard. 2010. “Double Exports in Five Years?” *The Becker-Posner Blog*, February 21. <http://uchicagolaw.typepad.com/beckerposner/2010/02/double-exports-in-five-years-posner.html>. (Posner 2010)

20.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인용

– 참고문헌에는 표시하지 않으므로, 글 본문 안에서 괄호로 묶어 내주 형식으로만 표시한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와 날짜를 표시한다.

– 예시: (John Doe, e-mail message to author, February 28, 2010) 또는 (John Doe, pers. comm.)

– ‘pers. comm.’은 ‘personal communication’의 약자이다.

21.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인용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글제목”. 발행기관. 데이터베이스 이름 (일련번호).

Choi, Mihwa. 2008.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ProQuest (AAT 3300426).

B. APA 스타일 주석 표시와 참고문헌 인용 방법³²⁾

1. 일반적인 인용 표시

내주 표시: (저자의 성, 발행연도) 형식으로 한다.

저자의 이름이 없으면 (책제목, 발행연도) 형식으로 한다. 책제목이 길면, 약칭을 사용하며,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논문제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발행연도가 없으면, (저자의 성, n.d.)로 표시한다. ('n.d.'는 'no date'의 약자)

2. 인터넷 자료 인용

내주 표시: 본문 안에 저자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면 괄호 안에 URL 주소만 밝힌다.

Gussie Fink-Nottle has set up a discussion forum for newt fanciers (<http://gfnnngg.livejournal.com/>).

다시 인용할 때는 (저자의 성, 연도)만 언급한다.
He said that ... (Fink-Nottle, 2014).

참고문헌 표시: 성, 이름, (발행연도), 글의 제목(글의 형식), URL 주소.
Author, A. (date). Title of document [Format description].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3. 전자책의 인용 표시

전자책은 URL 주소나 DOI 주소를 밝힌다. 가능하다면 페이지수도 밝힌다.

전자책을 참고문헌에 표시:

Author, A. (date). Title of book.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Author, A. (date). Title of book. doi:xxxxxxxxxx.

편집된 전자책(또는 논문집)의 일부분(소논문, 장, 절)을 참고문헌에 표시:

Author, A. (date). Title of chapter. In E. Editor (Ed.), Title of book (pp. xx-xx).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Author, A. (date). Title of chapter. In E. Editor (Ed.), Title of book (pp. xx-xx). doi:xxxxxxxxxx.

32) APA Style 웹사이트(www.apastyle.org)의 "Quick Answers-References" 문서를 참고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4. 인터뷰 인용 표시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 인터뷰임을 밝히는 언급, 인터뷰 날짜 등을 밝힌다.
(G. Fink-Nottle,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5, 2011)

5.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인용 표시

APA에서 명확히 정한 규칙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제안되고 있다.
개인 SNS의 내주 표시: 페이스북, 트위터 URL을 밝힌다.
Obama uses Twitter (<http://www.twitter.com/barackobama>) and Facebook (<http://www.facebook.com/barackobama>) to keep citizens up to speed on his initiatives...

개인 SNS의 참고문헌 표시: 글 작성자, 날짜, 글의 형식, URL 주소.
Barack Obama. (2009a, July 15). Launched American Graduation Initiative to help additional 5 mill. Americans graduate college by 2020: <http://xxxxxxxxxx> [Twitter post].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Barack Obama. (2009b, October 9). Humbled. <http://xxxxxxxxxx> [Facebook update].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조직/집단 SNS의 참고문헌 표시: 글 작성자(조직 이름 또는 페이지 제목), 작성연도, SNS 형식, 글 확인날짜, URL 주소.
Love Jordan. [2009] In Facebook [Fan page]. Retrieved March 17, 2010, from <http://www.facebook.com/xxxxxxxxxx>.
위의 사례에서 "Love Jordan"은 페이스북 '팬 페이지'의 제목이다.

When I was your age, Pluto was a planet. [2009]. In Facebook [Group page]. Retrieved December 16, 2009, from <http://www.facebook.com/xxxxxxxxxx>.
위의 사례에서 "When I was your age, Pluto was a planet"은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의 제목이다.

글의 작성연도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n.d.)로 표시하며, 비교적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ca. 2009]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

6. 유튜브 동영상 인용

동영상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Surname, personal name. [Screen name]. (year, month day). Title of video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xxxxxxxxx>.

동영상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screen name을 맨앞에 쓴다.

Screen name. (year, month day). Title of video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www.facebook.com/xxxxxxxxx>.

7. 전자출판된 논문 인용

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수, DOI 주소.

Author, A.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Title, X, xxx-xxx. doi:xxxxxx

기 획 · 진 행

- 이상엽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 김인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조성실장
-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장
-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책임연구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인	채	일	2015년 11월 30일
발	행	일	2015년 11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대전청사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Fax. 042-869-6777 서울청사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
자료관련	문의처	학술기반진흥팀 이민호 (Tel. 042-869-6382)	

[비매품] 본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및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전자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동 지침 해설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연구윤리 지침의 구체성 확보에 관한 연구(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 일부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